

발 간 등 록 번 호

11-1390804-000398-01

사회복귀예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가이드

RDA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발 간 등 록 번 호

11-1390804-000398-01

사회복귀예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가이드

RDA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CONTENTS



I. 사회복귀예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모델 개발의 개요 / 1

II. 원예치료에 대한 이해 / 7

1. 원예치료의 정의
2. 원예치료의 일반적 효과

III. 교정업무의 이해 / 13

1. 교정본부 조직
2. 총칙
3. 수형자의 분류
4. 교정처우 등
5. 운영지원작업 및 자치제 운영
6. 심의·의결기구 등

IV.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제문제 및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 47

1.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제문제
2.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교정·교화 프로그램 요구





V.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원예식물 및 원예활동 선호도 / 57

1.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서의 원예활동에 대한 전반적 인식조사
2.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원예활동 선호도
3.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원예식물 선호도
4. 사회복귀예정자를 위한 원예치료에서의 원예활동, 원예식물 선택과 관련한 고려사항

VI.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모델 / 67

1.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재배활동 중심 심리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2.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정원활동 중심 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3. 프로그램의 요소
4. 원예치료과정
5. 원예치료적 중재
6. 프로그램의 운영



VII.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 89

1.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재배활동 중심 심리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구성
2.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정원활동 중심 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구성





I. 사회복귀예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모델 개발의 개요





1. 개발의 개요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공동체 참여를 통한 상향식 접근방법이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009). 이에 정부에서는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 범죄 감소를 위한 여러 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정시설에서도 수형자를 격리 수용하여 건전한 시민의 일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교화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오민자, 2004).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Ministry of Justice, 2007)에 따르면 교정기관 내 수형자의 처우와 교정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로 볼 수 있다. 출소자들이 건전한 사회복귀에 실패하는 경우 대부분 재범과 연결되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 Foundation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2009)에서는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연간 약 23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교정기관 내에서 겪는 동료 관계의 어려움은 출소 후에 부적응을 야기하고 결국 사회적 낙오, 재범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교정·교화를 통하여 범죄적 심성을 순화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교화처우로는 교육, 종교 프로그램, TV 시청 및 신문열람, 특별활동, 문화예술, 가족관계회복, 사회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러나 교정기관 수형자들은 수용기간 동안 불안, 우울, 분노, 피해의식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문제들을 완화시키고 부정적인 사고들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적 차원의 치료 프로그램 실시가 요구된다(오민자, 2004). 캐나다, 호주, 미국 등 선진국의 교정시설에서는 조작적 조건형성 전략, 통상 화폐경제(token economy) 등을 이용한 치료, 집단상담, 원예치료, 미술치료, 동물을 이용한 치료 등 수형자를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교정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비해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교정처우 프로그램 시행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이주연, 2008).

원예치료는 '식물 및 정원일과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인간의 인지, 사회, 심리 및 신체적 적응력을 개선시키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신체 및 정신, 영혼의 치유를 도모하는 과정'이다(AHTA, 2006). 특히 재배활동은 식물생장을 경험하게 하고 식물의 삶의 주기와 인간 삶의 주기를 통합시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이경근, 2009). Matsuo(2004)는 원예치료의 치료적 핵심을 인간이 식물을 매개체로 양육과 획득을 경험하고, 한 생명의 생명주기 전체를 관찰하며 얻게 되는 경험을 토대로 자기 자신의 삶을 보다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식물 세계의 사건들에서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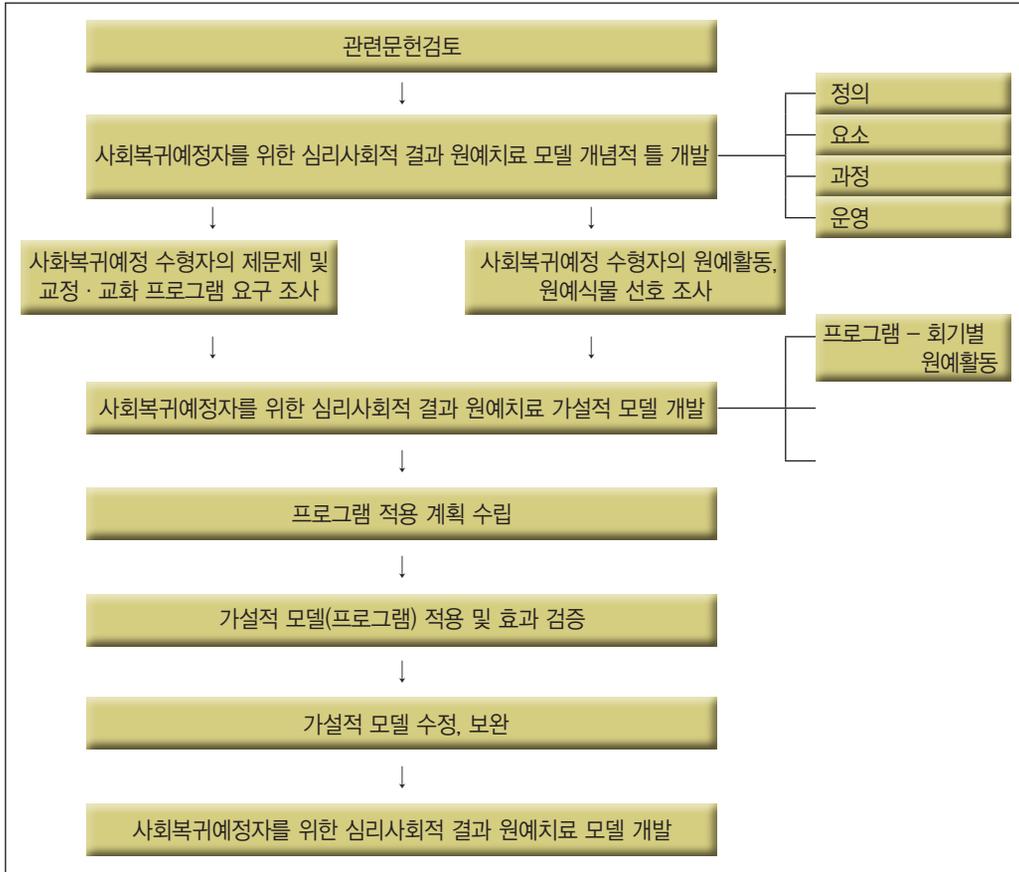
영되어진 그들 자신만의 삶에서 비슷한 주제들에 대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자각이 있으며 (Mattson, 1982)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물의 생명주기와 인간 자신의 생명주기를 쉽게 바꾸어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원예치료가 인간의 건강과 안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Stamm and Barber, 1999). 특히 원예치료가 노인의 우울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Chi, 2012; Lee, 2008; Jeong, 2009; Chon, 2007)을 보여 주는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음으로 불안, 우울, 분노, 피해의식 등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교화를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가 필요한 수행자들에게 원예치료를 적용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는 감정을 표출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돌아보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행자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단편적으로 시범 운영되었고, 원예활동 위주로 교정·교화에 관련한 체계화된 프로그램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원예활동을 적용한 일부 교정기관에서 원예의 교정·교화 효과를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귀예정자의 취업·창업에 관한 효과적인 융합행정방안 모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이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된 바 있다.

따라서 원예활동의 양육, 돌봄 등과 관련된 치유적 특성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전문 교정·교화용 원예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의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사회복지예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모델은 교정·교화용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정·교화 대상(사회복지예정 수형자)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완성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 및 개발 과정을 거쳤다.



사회복지예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모델 개발 흐름도

개발된 사회복지예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모델은 본서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예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 재배활동과 심리적 결과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예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 정원활동과 사회적 결과를 중심으로 -’, ‘수형자 대상 원예치료 프로그램 사례집 - 재배활동과 심리적 결과를 중심으로 -’, ‘수형자 대상 원예치료 프로그램 사례집 - 정원활동과 사회적 결과를 중심으로 -’까지 총 5권의 자료에 내용을 담았다.

이상의 관련자료들이 교정기관 수형자 및 사회복지예정 수형자들을 위한 전문적 원예치료로 활용되고, 원예치료사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MEMO

A large, rounded rectangular memo template with a wavy border. The interior of the template is filled with horizontal wavy lines,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The template is centered on a background of a gray and white checkerboard pattern.



II. 원예치료에 대한 이해

1. 원예치료의 정의

2. 원예치료의 일반적 효과





1. 원예치료의 정의

미국원예치료협회(American Horticultural Therapy Association : AHTA)는 1991년부터 원예치료를 ‘식물과 원예활동을 이용하여 인간의 사회, 심리 및 신체적 적응력을 개선시키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신체, 정신, 영적 치유를 도모하는 과정’이라고 원예치료에 관한 최초의 통합된 정의를 내렸다. 이는 원예치료의 광범위한 치유 및 치료적 역할과 원예활동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단순한 작업이 아닌 일련의 순서를 가지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사람의 신체, 정신, 영적 개선을 위하여 식물과 정원활동을 이용하는 과정’이며, 연령, 배경, 능력에 상관없이 효과적이고 유익한 처치(AHTA, 2004)로 새로이 원예치료의 정의를 수정하면서 ‘원예활동’을 ‘정원활동’으로 그 개념을 확장시켰으며, 2006년에는 정원활동을 정원일과 관련된 활동(gardening-related activities)으로 수정하면서 원예치료에 이용 가능한 원예활동의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확장하고 있다. 또한 특이적 처치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훈련받은 치료사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적극적인 치료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원예치료는 ‘식물과 원예활동을 이용하여 인간의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개선을 목적으로 훈련받은 전문가(치료사)에 의해 촉진되는 과정’으로 정의 할 수 있다.

2. 원예치료의 일반적 효과

원예치료의 일반적 효과 및 그 효과 영역의 구분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본 매뉴얼에서는 그 효과를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신체적 효과

원예활동을 통한 대근육, 미세근육, 관절의 사용은 근력, 근육 조절력, 근유연성, 협응력 등을 향상 시키며, 원예활동의 강도 및 종류에 따라 칼로리 소모가 일어난다. 특히 서경순(2004)은 한 시간의 원예활동이 한 시간의 자전거 타기나 빠른 보행과 칼로리 소모가 유사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인지적 효과

일반적으로 인지란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으로 지각, 기억, 상상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하여 무엇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된다(네이버 국어사전). 모든 원예활동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인지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원



예식물의 종류, 번식·이식, 토양의 배합, 식물을 심는 위치나 배치 장소, 꽃꽂이, 만들기와 같은 화훼장식 활용법, 연 중 원예활동에 따른 계획성 및 실제 체험과 같은 원예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개념, 용어를 기억, 습득한다. 또한 자연은 의도하지 않은 집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집중과 관찰력은 식물과 인간, 식물과 동물, 그 밖의 다른 생명체들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발전된 평가능력을 통한 계획력 및 결정력이 증가될 수 있다.

3) 심리적 효과

원예치료과정에서 경험하는 원예활동은 치료적 목적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의도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계획되어진다. 특히 성공과 성취의 경험, 자신이 관리하고 양육해야할 식물이 주어짐에 대한 책임감과 책임의 완수는 자신에 대한 긍지감을 가지게 하고, 이러한 성취감, 만족감은 궁극적으로 자신감, 자아존중감 향상, 자아개념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만족감 강화를 통하여 우울과 부정적 성향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전정, 화분의 해체, 식물의 분리, 잡초제거 등을 이용하여 공격성을 허용된 범위 안에서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부정적인 분노와 공격성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러한 감정이 완화되고,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애정과 증오의 갈등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과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치료사의 개입을 통하여 표출된 공격성의 방향을 수정하고, 느린 원예식물의 성장과정을 통한 기다림을 통하여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식물의 생장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식물의 성장과정(발아, 개화 등)을 기다려야 하며 기다리는 동안 식물생장의 다음 과정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가 유발된다. 이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부여를 통하여 희망, 의욕, 동기부여를 하도록 돕는다. 또한 원예활동 중에 경험하는 다양한 현상과 사용되는 소재들은 질문거리를 유발하고 식물성장주기(plant life cycle)에 인간생명주기(human life cycle)를 이입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흥미, 기대감, 희망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한 동기부여, 정열의 증진 효과를 이룰 수 있다.

4) 사회적 효과

치료과정에서의 치료사, 대상자, 비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원예식물 및 원예활동의 상징성과 관련된 유추에 관한 의사교류의 증가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식물은 보편적 화제의 대상으로 치료적 형태의 세팅에서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대화와 의사소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예치료의 사회적 측면 효과를 집단 내의 상호작용과 집단 밖의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집단 내 상호작용은 집단구성원의 공동목표를 향한 공동 작업을 통하여 서로가 좀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어 나감을 배울 수 있으며, 협동 활동을 통한 역할수행 및 권리 존중, 협력성 증대, 책임감 공유, 지도력 개발의 기회를 통한 리더쉽 함양, 집단구성원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한 자기발견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집단 밖 상호작용은 지역 사회, 공동 사회 구성원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통하여 원예활동 후 생산된 산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를 통하여 사회 속 생산적 존재로서의 자아감 향상의 효과를 가지게 한다.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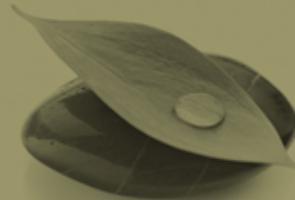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ular area with a thin black border, containing 20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Ⅲ. 교정업무의 이해

1. 교정본부 조직
2. 총칙
3. 수형자의 분류
4. 교정처우 등
5. 운영지원작업 및 자치제 운영
6. 심의·의결기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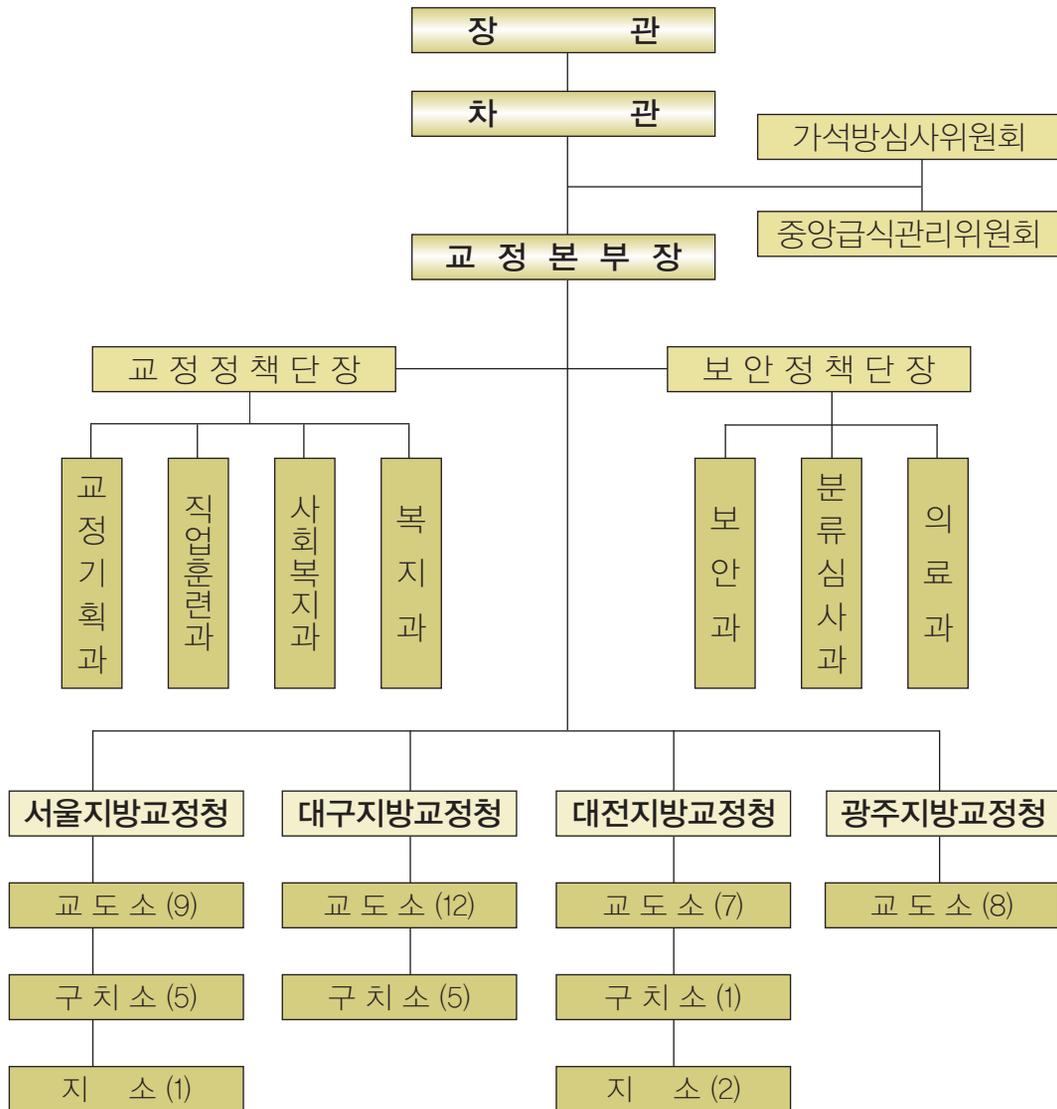




1. 교정본부 조직

1) 조직도(2012년 현재)

- 교정본부 : 교정본부장, 2정책단장, 7과
- 소속기관 : 54개 기관
 - 지방교정청 4, 구치소 11, 교도소 36, 지소 3



※ 교정기관 종류 : 일반, 외국인, 여자, 직업훈련, 개방, 소년



□ 과별 업무분장

교정정책단	교정기획과 (총무과)	교정행정 종합계획 수립, 복무지도 등
	직업훈련과	수형자 직업훈련, 교도작업 운영, 취업 및 창업지원 등
	사회복귀과	수형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 등
	복지과	교정행정 예산 편성 및 재배정, 교정시설 신축 등
보안정책단	보안과	수형자의 처우·규율·이송 및 교정시설 방호
	분류심사과	수형자 분류처우·가석방, 교정관계 법령 정비
	의료과	수형자 보건·위생·의료 및 수형자 인권

2. 총칙

1) 목적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은 이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형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형구분 및 절차

적법 서류 확인후 교도소와 구치소로 구분하여 수형

- (1) 수형자란: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로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 (2) 미결수형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
- (3)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4) 수형자란: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형된 사람



3) 교정 · 교화

(1) 교 육

① 학과교육

- 초·중등교육(검정고시, 방송고)
- 고등교육(전문대, 방송대, 독학사)
- 외국어교육
- 기타(인성교육, 한글, 수화)

② 정보화교육

③ 정보사업(공안 및 관련 업무)

(2) 교 화(각종 문화프로그램 등)

① 가족 관계 회복프로그램

- 인성교육, 문화프로그램, 아버지학교 등

② 교정위원(협의회, 연합회, 중앙회)

(3) 사회처우(후면 설명으로 생략)

① 사회견학

- 가족만남의 날
- 가족만남의 집

② 중간처우

- 중간처우의 집(소망의 집)
- 사회적응 훈련원

③ 귀휴

④ 사회복귀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 주선
- 출소자 귀가여비 지원
- 사회복귀관련 법인업무

⑤ 교화방송센터

- 교정본부 통합 운영 체제로 전환



3. 수형자의 분류

1) 분류심사

(1) 분류심사 목적 등

〔§법〕제59조(분류심사) ①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이하 “분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법 제59조제1항의 분류심사는 합리적 분류기법으로 수형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수용 및 처우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스스로 개선하고 보다 빨리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류심사는 합리적 분류기법으로 수형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수형 및 처우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스스로 개선하고 보다 빨리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분류심사 종류

분류심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입심사 : 새로운 형이 확정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처음 실시하는 분류심사
- ② 재심사 :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분류심사

① 신입심사

- 신입심사는 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자를 제외한 모든 신입수형자에 대하여 실시

② 재심사

재심사는 신입심사를 완료한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함

가. 정기재심사

가) 신입심사를 한 후 형기의 일정기간이 지난 때에 실시하는 분류심사

나. 부정기 재심사

- 신입심사를 한 후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분류심사



(3) 분류심사 대상자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4) 신입수형자 처우의 원칙

유 형	입 소 시	분류심사 완료시 (위원회 의결시)
신입수형자	重경비처우급(S4급)	편입된 경비처우급
순수노역 수형자	일반경비처우급(S3급)	
분류심사 제외자	重경비처우급(S4급)	일반경비처우급(S3급)
분류심사 유예자(환자)	重경비처우급(S4급)	일반경비처우급(S3급)
분류심사 유예자(징벌자)	重경비처우급(S4급)	편입된 경비처우급
분류심사 유예자(거부자)	重경비처우급(S4급)	편입된 경비처우급

(5) 분류심사 제외자

1.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구류형 수형자 포함)
2. 순수한 노역장 유치자

(6) 분류심사 유예 사유

분류심사 유예란 분류심사 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를 보류(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예할 수 있음

①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

- 가. 상담이 불가능한 중환자
- 나.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정신미약자
- 다.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어 격리 수용된 자
- 라.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하여 유예된 경우에는 수시로 신입심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처우등급에 따라 접견, 가석방 등의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②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7) 국제수형자 개별처우계획

<시행규칙>제61조(국제수형자 개별처우계획)



① 소장은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교정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그 수형자의 수형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

- ①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정시설에 이입된 날부터 법령의 적용받을
- ② 외국 교정시설에서의 처우방법과 국내 교정시설에서의 처우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새로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함

(8) 범죄횟수

〈시행규칙〉제3조(범죄횟수)

- ① 수형자의 범죄횟수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횟수로 한다.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 : 10년
 - 2.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 5년

① 범죄횟수로 계산

- 가.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한 형 및 집행할 형
- 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한 형 및 집행할 형(집행유예 실효는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

② 범죄횟수로 불계산

- 가.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나. 집행유예가 실효대상이 아닌 경우(본건 범죄일시가 집행유예 판결확정일 이전에 해당될 때, 과실범)
- 다. 3년을 초과하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 10년을 경과한 경우
- 라. 3년 이하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 5년을 경과한 경우

③ 기간계산 방법

- 가. 최종형이 형기종료인 경우에는 형기종료일부터 본형 판결 확정일까지



- 나. 최종형이 가석방인 경우에는 원 형기종료일부터 본형 판결 확정일
- 다. 사면 또는 감형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사면 또는 감형된 날부터 본형 판결 확정일
- 라. 최종형이 보호감호(치료감호) 병과인 경우에는 형의 종료일부터 본형 판결 확정일
- 마. 형의 시효완성인 경우에는 시효완성 일부터 본형 판결 확정일
- 바. 최종형이 경과한 집행유예인 경우(자격정지 및 자격상실 포함)

④ 수형횟수

- 가.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형된 횟수를 말함

(9) 분류심사 사항

〈시행규칙〉제63조(분류심사 사항) 분류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우등급에 관한 사항
2. 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
3. 보안상의 위험도 측정 및 거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송에 관한 사항
6. 가석방 및 귀휴심사에 관한 사항
7. 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외부전문가 참여 등

〔§법〕제58조(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교정학·범죄학·사회학·심리학·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수형자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제152조(외부인사의 준수사항) 교정위원, 교정자문위원, 그 밖에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외부인사는 활동 중에 알게 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및 수형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① 분류심사에 범죄학·교정학 등의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의 지식·정보 등의 활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반영 시킴으로써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분류심사를 실시하기 위함
- ② 분류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업무상 알게 된 수형자의 개인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



으로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2) 분류조사

(1) 분류조사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성장과정, 범죄경력,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에 대하여 조사한다.

〈시행규칙〉제69조(분류조사 사항) ① 신입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성장과정
2. 학력 및 직업경력
3. 생활환경
4. 건강상태 및 병력사항
5. 심리적 특성
6. 마약·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
7.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8. 범죄경력 및 범행내용
9. 폭력조직 가담여부 및 정도
10. 교정시설 총 수형기간
11. 교정시설 수형(과거에 수형된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 받은 징벌 관련 사항
12. 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자살기도(企圖) 유무와 횡수
13. 상담관찰 사항
14. 수형생활태도
15. 범죄피해의 회복 노력 및 정도
16. 석방 후의 생활계획
17. 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분류조사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관련서류·기록을 열람하거나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수형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수형자의 출생·양육·교육·직업력·생활력·성장과정·범죄경력 등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함



(2) 분류조사 방법

〈시행규칙〉제70조(분류조사 방법) 분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
2. 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3. 검찰청, 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4.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5. 그 밖에 효율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3) 분류검사

(1) 분류검사

〔법〕제59조(분류검사) ③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시행규칙〉제71조(분류검사) ①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측정·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 및 그 밖에 처우상 필요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2조제2항에 따라 분류심사가 유예된 때
2. 그 밖에 인성검사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
- ③ 이해력의 현저한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담 내용과 관련 서류를 토대로 인성을 판정하여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지능 및 적성 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입심사 대상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1년 이상이고 나이가 35세 이하인 경우에 한다. 다만,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인성검사(교정심리검사 포함) 대상자

- 가. 분류심사 제외·유예자를 제외한 모든 신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
- 나. 그 밖에 처우상 필요한 수형자 : 신입심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처우 또는 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성검사 실시할 수 있음
- 가) 인성검사 대상자가 아닌 수형자가 학과교육·직업훈련 등의 처우를 받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
- 나) 위험성 예측을 위해 일정한 범죄유형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정신진



단검사, 자살예측 검사 등)

다) 가, 나의 경우 반드시 관련부서의 협조공문이 있어야 함

다. 장기수형자 인성검사 실시

형기 10년 이상 장기수형자의 경우에는 형기의 2/3에 해당하는 때에 인성검사를 재실시하여 수형생활에 따른 인성변화를 중간 점검함

② 인성검사 제외자

가. 한글을 읽을 수 없거나 이해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이 곤란한 자

다. 상담을 통한 분류심사는 가능하나 검사가 불가능한 자

라. 정신이상자

마. 관계서류나 기록, 상담 등을 통하여 인성이 정상적인 자료 사료되어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인성검사 거부자에 대한 조치

가. 인성검사는 분류심사의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이며,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분류심사 거부자로서 분류심사 유예자가 됨을 고지

나. 인성검사를 거부할 경우 처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

④ 인성검사 특이자 해제

가. 특이자 해제 사유

가) 정기 또는 부정기재심사 시 심리검사 담당자가 인성검사 특이자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보안근무자 등이 인성검사 특이자의 수형생활 태도, 행동관찰 등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특이자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해제 시 고려사항

수형생활태도, 처우성과, 상담관찰결과, 인성검사 재검사 결과, 집행할 형기 등 고려

다. 해제 절차

가) 심리검사 담당자는 인성재검사 결과, 상담관찰 결과, 수형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 동정관찰보고서를 작성하여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

(2) 분류검사 결과 처리 등

① 소장은 수형자에 대하여 분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분류처우 심사표에 기록·편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가 석방 후 취업 등을 위해 자신의 적성검사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



는 이를 알려줄 수 있다.

③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분류검사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교정시설의 특성에 맞게 소장이 정할 수 있다.

① 분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분류처우 심사표 해당란에 기록하거나 관련자료를 첨부함

② 수형자가 석방 후 취업 등을 위해 자신의 적성검사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전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하여 알려줌으로써 석방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③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 외에 필요한 검사 및 방법 등은 각 교정시설의 특성에 맞게 소장이 정할 수 있음

4) 수형자 처우등급

(1) 처우등급

《시행령》제84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① 법 제57조제3항에서 “교정성적”이란 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 상벌 유무, 교육 및 작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처우수준을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제72조(처우등급)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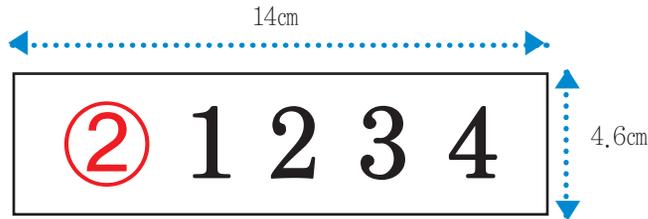
1. 기본수형급: 성별·국적·나이·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2. 경비처우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할 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3. 개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 경비처우급의 표시

경비처우급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형자 번호표의 왼쪽 끝 부분에 지름 2센티미터의 원을 폭 0.2센티미터의 테로 두르고 그 원안에 세로 1.5센티미터의 크기로 해당 경비처우급을 숫자로 표시하되 테 및 숫자는 적색으로 함(경비처우급의 표시는 S1급, S2급, S3급, S4급으로 표시되나 약식으로 ①, ②, ③, ④급으로 표시함)



(2) 기본수형급

〈시행규칙〉제73조(기본수용급) 기본수형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여성수형자
2. 외국인수형자
3. 금고형수형자
4.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5. 23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6. 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7. 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8.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9.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 ① 여성수형자(W급 : Woman prisoner)
- ② 외국인수형자(F급 : Foreign prisoner)
- ③ 금고형수형자(I급 : Imprisonment sentenced prisoner)
- ④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J급 : Juvenile prisoner)
- ⑤ 23세 미만의 청년수형자(Y급 : Young prisoner)
- ⑥ 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A급 : Aged prisoner)
- ⑦ 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수형자(L급 : Long-term prisoner)
- ⑧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M급 : Mentally handicapped prisoner)
- ⑨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P급 : Physically handicapped prisoner)

(3) 수형자 경비처우급 및 작업기준

〈시행규칙〉제74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형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행자

- 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행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행자
- 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행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행자
- 4. 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행되어 기본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행자

②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방처우급: 외부통근작업 및 구외작업 가능
- 2. 완화경비처우급: 구외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 3. 일반경비처우급: 구내작업 및 필요시 구외작업 가능
- 4. 중(重)경비처우급: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① 경비처우급 판정 및 처우기준

- 가. 개방처우급(S1급)
- 나. 완화경비처우급(S2급)
- 다. 일반경비처우급(S3급)
- 라. 중경비처우급(S4급)

(4) 개별처우급

〈시행규칙〉제76조(개별처우급) 개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직업훈련
- 2. 학과교육
- 3. 생활지도
- 4. 작업지도
- 5. 관용작업
- 6. 의료처우
- 7. 자치처우
- 8. 개방처우
- 9. 집중처우

① 개별처우급 판정 및 처우기준

- 가. 직업훈련(V급 : Vocational Training)



- 나. 학과교육(E급 : Education Curriculum)
 - 다. 생활지도(G급 : Guidance)
 - 라. 작업지도(R급 : Regular Work)
 - 마. 운영지원작업(N급 : National employment work)
 - 바. 의료처우(T급 : medical Treatment)
 - 사. 자치처우(H급 : Halfway Treatment)
 - 아. 개방처우(O급 : Open Treatment)
 - 자. 집중처우(C급 : Concentrated Treatment)
- ② 수형자에게 가장 적합한 개별처우급을 2개까지 부여할 수 있음

5) 수용

(1) 처우등급별 수용 등

〈시행규칙〉제83조(처우등급별 수용 등) ① 소장은 수형자를 기본수용급별·경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본수용급·경비처우급이 다른 수형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형자를 수용하는 경우 개별처우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비처우급·개별처우급이 같은 수형자 집단으로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 ① 수형관리 및 처우의 효율성을 위해 기본수용급 및 경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함
- ② 교정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비처우급이 다른 수형자를 같은 경비등급의 시설에 함께 수용·처우할 수 있음

(2) 경비등급시설별 수용 원칙

- ① 개방시설 : 개방처우급(S1급)
- ② 완화경비시설 : 완화경비처우급(S2급)
- ③ 일반경비시설 : 일반경비처우급(S3급)
- ④ 중경비시설 : 중경비처우급(S4급)

경비처우급 경비등급시설	개방처우급 (S1급)	완화경비처우급 (S2급)	일반경비처우급 (S3급)	중경비처우급 (S4급)
개방시설	원칙	-	-	-
완화경비시설	-	원칙	-	-



일반경비시설	-	-	원칙	-
중경비시설	-	-	-	원칙

⑤ 경비처우급별 처우 가능한 작업

- 가. 개방처우급(S1급) : 구내작업, 개방지역작업, 외부통근작업
- 나. 완화경비처우급(S2급) : 구내작업, 개방지역작업,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 다. 일반경비처우급(S3급) : 구내작업, 필요시 개방지역작업(외부통근 작업 포함)
- 라. 중(重)경비처우급(S4급) : 필요시 구내작업

경비등급시설 경비처우급	구내작업	개방지역작업	외부통근작업
개방처우급 (S1급)	가능	가능	가능
완화경비처우급 (S2급)	가능	가능	(필요시)
일반경비처우급 (S3급)	가능	(필요시)	
중경비처우급 (S4급)	(필요시)		

⑥ 취사, 수용동청소 등 운영지원작업을 위하여 경비처우급이 서로 다른 수행자를 같은 경비등급시설에 수용하여 작업 등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6) 소득점수 평정 및 평가

(1) 소득점수

〈시행규칙〉제77조(소득점수) 소득점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1. 수행생활 태도: 5점 이내
2. 작업 또는 교육 성적: 5점 이내

(2) 소득점수 평가 기간 및 방법

〈시행규칙〉제78조(소득점수 평가 기간 및 방법) ① 소장은 수행자의 소득점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에 따라 매월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행자의 소득점수 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수행생활 태도: 품행·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 매우양호(수, 5점)·양호(우, 4점)·보통(미, 3점)·개선요망(양, 2점)·불량(가, 1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한다.
2. 작업 또는 교육 성적: 법 제63조·제65조에 따라 부과된 작업·교육의 실적 정도와 근면성 등에 따라 매우우수(수, 5점)·우수(우, 4점)·보통(미, 3점)·노력요망(양, 2점)·불량(가, 1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행자의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작업 숙련도, 기술력, 작업기간, 교육태도, 시험성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보안·작업 담당교도관 및 관구(교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용자의 적정한 관리 및 처우를 위하여 수용사동별 또는 작업장별로 나누어진 교정시설 안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책임교도관은 서로 협의하여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에 해당 수행자에 대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소득점수를 채점한다.

(3) 소득점수 평가기준

〈시행규칙〉제79조(소득점수 평가기준) ① 수행생활 태도 점수와 작업 또는 교육성적 점수는 제78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채점하되, 수는 소속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 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우는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 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우를 각각 1명으로 채점할 수 있다.

② 소장이 작업장 중 작업의 특성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수 작업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소득점수의 수는 5퍼센트 이내, 우는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확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행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수행생활 태도와 작업·교육성적 점수 합산 채점기준

- 가. 수 : 9점 ~ 10점
- 나. 우 : 7점 ~ 8점
- 다. 미 : 5점 ~ 6점
- 마. 양 : 3점 ~ 4점
- 바. 가 : 1점 ~ 2점

② 수행생활 태도와 작업·교육성적 점수의 채점비율

- 가. 수 : 소속 작업장·교육장 전체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나. 우 : 소속 작업장·교육장 전체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 수가 없는 경우 우를 40%까지 적용할 수 있음(우 40% 인원 = 수 10% + 우 30% 인원)



- 다. 소속 작업장·교육장 전체인원에서 구류자, 노역유치자 등 동 지침의 적용제외자 및 분류심사 제외자, 경비처우급 미확정자는 제외. 따라서, 소속작업장 전체인원 20명 중 노역유치자, 구류자 등이 11명이 있을 경우 11명을 제외한 9명만이 소득점수 평가대상이 됨
- 라. 다만, 작업장·교육장 전체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의 수·우 채점비율은 각각 수 1명, 우 1명으로 할 수 있음
- 마. 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계산함

작업장 인원	4명	3명	2명	1명
채점 비율	수 - 1명 우 - 1명	수 - 1명 우 - 1명	수 - 1명 우 - 1명	우 - 1명 (수는 없음)

(4) 경비처우급 조정

〔§법〕제57조(처우) ③ 수행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성적이 우수한 수행자는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제81조(경비처우급 조정) 경비처우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상향 조정: 8점 이상
2. 하향 조정: 5점 이하

① 경비처우급 조정 기준(조건)

- 가. 상향조정 기준(조건) : 재심사 기간 동안 취득한 평가점수(소득점수)의 평정결과 8점 이상이면 현행 경비처우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일단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 나. 하향조정 기준(조건) : 재심사 기간 동안 취득한 평가점수(소득점수)의 평정결과 5점 이하이면 현행 경비처우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일단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② 경비처우급 조정

경비처우급의 상향 또는 하향조정은 기준점수와 그 밖의 처우성과 된 처우실시

(5) 이송수형자 소득점수 평가

① 수행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경우 소득점수를 평가 또는 평정하는 교정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15일 이전 이송 : 이송받는 교정시설
 2. 매월 16일 이후 이송 : 이송하는 교정시설
- ② 소장은 수형자를 매월 15일 이전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평가 또는 평정에 필요한 자료를, 16일 이후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평가 또는 평정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소득점수 평가·평정기관

- 가. 매월 15일 이전에 이송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이송받는 기관에서 평가 또는 평정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 받아 평가 또는 평정
- 나. 매월 16일 이후에 이송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이송하는 기관에서 평가 또는 평정하여 그 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송부

② 수형자를 이송하는 기관은 해당 수형자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이송받는 기관에 송부하여야 함

7) 재범위험성 평가

(1) 재범위험성 평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위험성평가) 소장은 수형자에 대해 분류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경비등급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분류심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1. 개방시설 : 석방 후 생활계획 등을 고려한 사회적응 욕구 평가
2. 완화경비시설 :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위험성 평가
3. 일반경비시설 : 시설내 생활 적응 또는 보안상 위험성 예측을 위한 위험성 평가
4. 중(重)경비시설 : 문제행동 유발가능성 예측 및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평가
 - 재범위험성 평가는 재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평정으로서, 재범 위험성에 따른 처우계획 수립, 가석방 신청 및 석방 후 보호관찰 단계에서까지 활용할 수 있음

(2) 평가방법

- 총점은 48점이며, ‘정적요인(33점)’과 ‘동적요인(15점)’으로 구성된 재수용 평가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재수용 위험성을 5개 단계로 등급화하고, 해당점수에 따른 위험등급을 평가
- 수형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부여



(3) 평가시기

① 평가는 수행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신입분류심사 시

나. 집행할형기 3년 이상의 수행자의 경우 2/3 정기재심사 시(경비처우급 S4급은 작성 제외)

② 평가결과를 분류처우심사표 9-1쪽의 비교란에 기재하고, 평가결과는 가석방 신청시 참고자료로 활용

4. 교정처우 등

1) 물품지급

〈시행규칙〉제84조(물품지급) ① 소장은 수행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류를 지급하는 경우 수행자가 개방처우급인 경우에는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봉사원 선정

〈시행규칙〉제85조(봉사원 선정)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의 수행자로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행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봉사원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과 역할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봉사원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선정 절차

①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은 해당관구의 추천에 따라 소장이 선정함

②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이 없거나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행자 중 봉사원 선정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일반경비처우급 수행자를 선정



2) 기간 연장

- 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② 봉사원의 활동기간은 동일 작업장의 경우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기술자격 취득이나 탁월한 기술능력으로 교도관의 보조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3) 선정 취소

- ① 봉사원 등이 선정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아 취소할 수 있다.
- ② 선정취소 사유
 - 가. 지시 명령 및 소내 규율을 위반하거나 수용질서를 문란케 한 때
 - 나. 건강 및 정신적 결함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때
 - 다. 작업장 봉사원이 다른 작업장으로 전업된 때
 - 라. 질서 문란행위를 은폐하거나 담당직원의 보좌하는 임무에 소홀함이 인정되는 때
 - 마. 기타 봉사원 등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분류처우위원회 결정

봉사원 선정(일반경비처우급에 한함), 기간연장, 선정취소(선정취소 사유의 마에 한함)에 관한 사항은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함

3) 자치생활

〈시행규칙〉제86조(자치생활)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수형자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 ③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접견 등

〈시행규칙〉제87조(접견)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방처우급: 1일 1회
- 2. 완화경비처우급: 월 6회
- 3.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4. 중(重)경비처우급: 월 4회

(1) 접견에 관한 규정

- ① 법 : 접견과 접견의 중지
- ② 시행령 : 접견의 예외, 접견시 외국어 사용금지, 접견시 유의사항 고지, 접견내용의 청구·기록·녹음·녹화, 접견중지 사유의 고지 등
- ③ 시행규칙 : 접견횟수와 접견장소

(2)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금고형과 징역형, 남성과 여성에 따라 구별하지 않음

※ 구류형 및 순수 노역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과 동일하게 적용

(3) 접견실에 마련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과 접견하는 화상접견은 접견횟수에 포함됨

(4)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접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법 제110조제2항)

(5) 접견 장소

〈시행규칙〉제88조(접견 장소)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① 개방처우급 수형자는 접견실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할 수 있음
- ②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접견실에서만 실시.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접견실 외에서 접견할 수 있음

5) 전화통화 등

〈시행규칙〉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방처우급: 월 5회 이내
- 2.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
-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다.



(1)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 횟수

- ① 개방처우급: 월 5회 이내,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회 연장 가능
- ②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회 연장 가능
- ③ 일반경비처우급, 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에서 허가 가능 (시행규칙 제25조)
- ④ 취사원의 경우 출역기간 등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 횟수와는 별도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은 월1회 이상 추가 실시함

(2) 1회 통화는 3분 이내로 함

(3) 통화차단

- ① 법 제42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화를 차단할 수 있음
- ② 통화를 차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에 대하여 전화사용을 제한 할 수 있음

(4) 수형자가 사용하는 공중전화기는 카드만을 사용하는 전화기로 하며 전화카드 구입은 수형자의 부담으로 함

6) 가족만남의 날 행사 등

〈시행규칙〉제89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7조의 접견 허용횟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장은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하며, “가족 만남의 집”이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 수용사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7)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

〈시행규칙〉제91조(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행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오락회가 개최되는 경우 소장은 해당 시설의 사정을 고려하여 참석인원,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오락회가 개최되는 경우 소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대상

- ①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행자
- ② 자치생활 수행자

(2) 개최횟수 : 월 2회 이내

(3) 소년수형자에게는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음

(4) 소장은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는 해당시설의 사정을 고려하여 내용·참석인원·방법 등을 정함

(5) 소장은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음

8) 사회적 처우

〈시행규칙〉제92조(사회적 처우)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행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행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1. 사회견학
- 2. 사회봉사
- 3.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 4.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

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허가하는 경우 소장은 별도의 수행자 의류를 지정하여 입게 한



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구매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4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수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처우의 대상

- ①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행자
- ②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행자

(2) 사회적 처우의 내용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활동

- ① 사회견학
- ② 사회봉사
- ③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 ④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

(3) 사회적 처우시 수행자 의류

- ① 별도의 수행자 의류를 지정하여 입게 함
- ②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구매의류를 입게할 수 있음

(4) 문화공연 관람 비용 지원

- ① 문화공연 관람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행자 부담임
- ②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9) 작업지정·변경 등

- ① 소장은 수행자에게 작업지정을 하는 경우 분류처우 심사표를 참조하여야 한다.
- ② 소년·여성·장애인·노인 및 외국인 수행자에게 작업 등을 부과할 때에는 신체적·심리적 특성(예 : 분류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수행자의 작업은 신입심사가 완료된 후에 분류심사 및 분류검사 결과를 참작하여 지정하여야 함
- ② 신청작업에 의하여 작업하고 있는 수행자는 신입심사 결과 적성 등이 다른 경우에 작업장을 조정할 수 있음
- ③ 특히 외부통근작업, 개방지역작업, 개방지역공장, 직업훈련대상자, 외부출장 직업훈련대



- 상자 및 학과교육대상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심사표를 참작하여 선정하여야 함
- ④ 소년·여성·장애인·노인 및 외국인 수행자에게 작업 등을 부과할 때에는 신체적·심리적 특성(예, 분류검사 결과) 등을 고려함

10) 작업·교육 등의 지도보조

〈시행규칙〉제94조(작업·교육 등의 지도보조) 소장은 수행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1) 소장은 교육 또는 작업에 필요한 경우 수행자에게 교도관의 작업·교육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 (2) 보조자 선정 기준
- ①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행자로서
 - ② 교육 또는 작업 성적이 우수하고
 - ③ 해당 교육장 등에 상당기간 취업하여
 - ④ 해당 직종에 기술이 있는 자로 함

11) 개인작업

〈시행규칙〉제95조(개인작업) ① 소장은 수행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행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작업을 하는 수행자에게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수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 개인작업 대상자
- ①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행자로서
 - ② 기사 이상 기술자격 취득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허용



(2) 개인작업 시간

개인작업은 작업일과 중 또는 일과를 마치고 여가시간에 허용하며 1일 2시간 이내로 함

(3) 개인작업 비용

- ① 개인작업에 필요한 재료, 소품 및 용구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기부담으로 함
- ② 개인작업으로 제작한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은 수행자의 수입으로 함

(4) 수행자 개인작업의 장소, 시간, 제작품목, 제품판매 및 보관 등 전반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함

(5) 개인작업용구

- ① 개인작업을 허용한 자에 대하여는 작업에 필요한 용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 ② 개인 작업용구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정 용기에 보관하게 함

(6)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수행자가 부담함.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12) 외부 직업훈련 등

〈시행규칙〉제96조(외부 직업훈련) ① 소장은 수행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비용은 수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훈련 대상자 :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행자

(2) 훈련 내용 :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3) 훈련 비용 : 훈련비용은 수행자 부담.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5. 운영지원작업 및 자치제 운영

1) 운영지원작업

(1) 적용범위

- ① 징역형 수형자
- ② 작업을 신청한 금고형 수형자
- ③ 구류형 수형자
- ④ 작업을 신청한 미결수형자
- ⑤ 노역장유치자
- ⑥ 피보호감호자(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형중인 자)

(2) 정의

“운영지원작업 취업자”란 교정시설의 시설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장에 취업한 수형자를 말함

(3)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정원

- ① 수형정원 2,000명 이상 교정시설 : 수형정원의 15퍼센트 이하
- ② 수형정원 1,000명 이상 교정시설 : 수형정원의 16퍼센트 이하
- ③ 수형정원 500명 이상 교정시설 : 수형정원의 17퍼센트 이하
- ④ 수형정원 500명 미만 교정시설 : 수형정원의 20퍼센트 이하
- ⑤ 소장은 교정시설의 운용에 필요한 경우 수형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음

(4) 교정시설의 작업장

- ① 운영지원작업 취업자의 작업장은 소장이 정함
- ② 소장은 운영지원작업 취업자의 총 정원 범위에서 각 작업장별 정원을 정함

(5) 구내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요건

① 선정요건

- 가.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수형자. 다만, 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수형자와 격리 수형되어 있는 수형동의 청소부는 동일한 병명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음
- 나.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 다.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는 사람. 다만, 일반경비시설 구내운영지원 작업자, 출역기피 작업장의 경우 이를 완화하여



선정 가능

- 라.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남은 형기가 5년 이하인 사람
- 마. 인성검사(교정심리검사 포함한다)결과 이상 인성이 아닌 사람
- 바. 다만, 구내 운영지원작업의 경우 사회적응을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위의 가, 다, 마의 기준을 완화하여 선정 가능
- 사. 일반경비시설에서는 보안에 밀접하게 연관된 작업장을 제외하고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선정 가능

② 선정 불가능자

- 가. 조직폭력수형자, 마약류수형자 등 시행규칙 제194조의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 나. 금치의 징벌(금치유예 포함)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금치 이외의 징벌 처분을 받은 수형자는 징벌 종료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다. 중경비처우급으로 지정된 사람

③ 처우등급 적용의 예외

- 가. 취사원 등 출역수형자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나. 취사원의 경우 작업지정에 따른 이송 보류 가능함

④ 미결수형자 운영지원작업 선정시 고려사항(신청작업의 경우)

- 가. 건강상태의 양호 및 작업 감당 여부(다만, 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수형자와 격리 수형되어 있는 수형동의 청소부는 동일한 병명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음)
- 나. 근면 성실, 책임감
- 다. 보호관계
- 라. 직업력
- 마. 해당 직종의 기능 등

2) 자치제

(1) 정의

- ① “자치제”란 수형자가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기상 시까지 자율적인 수형동생활을 하면서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게 하여 자립심을 배양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② “자치수형자”란 자치수용동에서 자치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를 말함

(2) 자치수형자 대상

- ① 외부통근 작업자, 개방지역작업 취업자



- ②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 ③ 교육대상자 또는 직업훈련대상자
- ④ 그 밖에 소장이 자치수행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자치수행동 운영

- ① 자치수행동은 수행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있는 건물의 상층 또는 중·상층을 지정·운영. 다만, 시설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하층을 운영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층 운영 가능
- ② 자치수행동 복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여 간접계호를 하여야 함

(4) 자치회 조직·운영 등

- ① 자치수행자는 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
 - 가. 분임 : 수행거실별로 구성되며 10명 내외의 분임원으로 구성
 - 나. 자치회 : 수행동별로 구성되며 각 분임으로 구성
- ② 분임에는 분임장 1명, 자치회에는 자치회장 1명을 두어 해당 조직을 대표하게 하며 그 임명은 소장이 함
- ③ 자치회의 의사결정은 분임장회의에서 결정함

(5) 자치회 심의 등

- ① 자치회 토의의제
 - 가. 자치생활 계획 수립
 - 나. 취미활동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음
- ③ 자치회의 회의는 수행자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하며, 분임토의는 수용거실에서 실시함

(6) 자치생활 시간

- ① 자치생활 시간은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다음날 기상 시까지로 함
- ② 소장은 시설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7) 자치수형동 근무

- ① 자치수형동의 자치생활 시간중에는 자치수형자가 불침번 근무를 함
- ② 자치수형동 근무는 1인이 2시간씩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③ 자치회장은 자치생활 시간 직후 인원을 점검하여 보고하고 취침 전까지 자치생활 등을 통제·조정함
- ④ 자치수형자는 거실열쇠를 소지할 수 없음

(8) 자치생활 범위

- ① 자치수형자는 인원점검, 거실안에서의 생활,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취침 전까지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음
- ② 소장은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생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하여야 함
- ③ 소장은 자치수형자의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자치수형동의 일정한 곳에 신문·잡지 등을 게시할 수 있음

(9) 자치생활의 취소

- ① 취소사유
 - 가. 신체·의류·거실 등의 검사·청소 및 정리정돈 등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 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개인책임제 : 자치생활은 공동책임제가 아닌 개인책임제 적용

6. 심의·의결기구 등

1) 분류처우회의

(1) 분류처우회의

- ① 수형자의 처우등급 등 시행규칙 제9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여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회의(이하 “처우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처우회의는 매월 7일에 개최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휴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 ③ 처우회의의 대표자(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이 회의개최를 요구하거나 수행자 처우와 관련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처우회의 기능

처우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처우등급별 사정 등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2. 소득점수 등의 평가 및 평정에 관한 사항
3. 수행자 처우와 관련하여 분류처우위원회 위원장이 자문한 사항
4. 그 밖의 수행자 수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3) 처우회의 구성

① 처우회의는 교육·작업·보안·분류심사·재심사담당자 및 관구책임자 등 관계 교도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분류심사과장이 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처우회의의 사무를 통할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7급 이상의 소속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2) 기타 위원회

- (1) 징벌위원회
- (2) 급식관리위원회
- (3) 교정자문위원회
- (4) 교도관회의
- (5) 귀휴심사위원회
- (6) 분류처우위원회

MEMO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ular area with a thin black border, containing 20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IV.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제문제 및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1.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제문제
2.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교정·교화 프로그램 요구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신체, 심리, 사회, 인지적 문제 및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무부를 통한 자료 수집 및 대상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2011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3년 이상의 형기, 1년 미만의 잔형기를 가진 수형자 3,146명을 대상으로 배부한 총 3,146부의 설문 중 2,211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1.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제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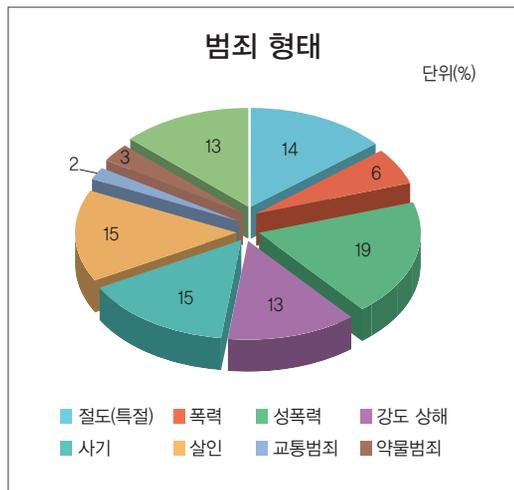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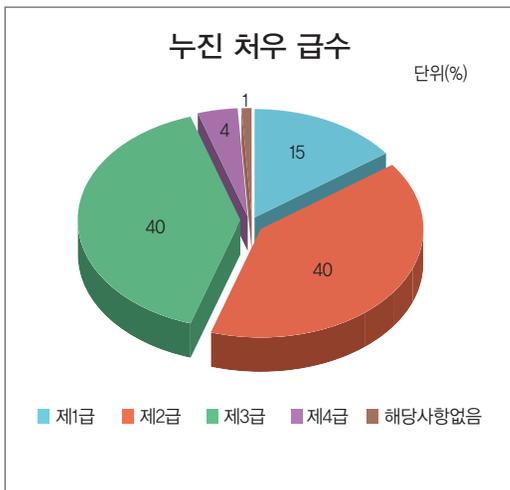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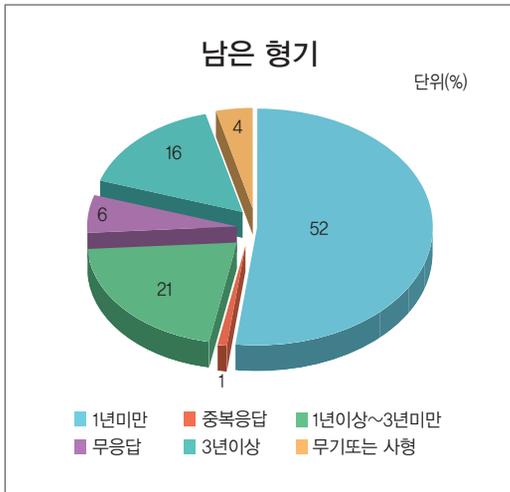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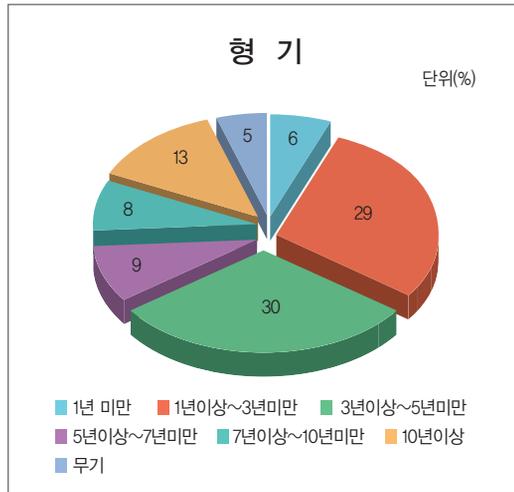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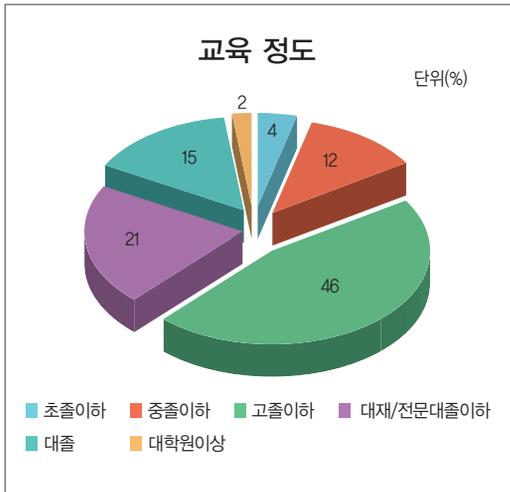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제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국내 교정기관 현황 및 수형자의 병적 상태 및 병력 통계현황을 요청하였고, 설문조사는 대상자의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erogatis et al. (1976)의 'Symptom Checklist-90-Revision'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김광일 등(1984)이 번안하여 재표준화한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목록 검사인 간이정신진단검사와 접견인, 출소 후 돌아갈 곳 등과 관련된 사회적 상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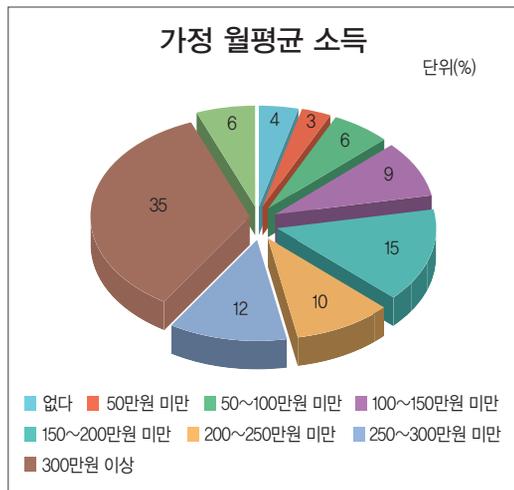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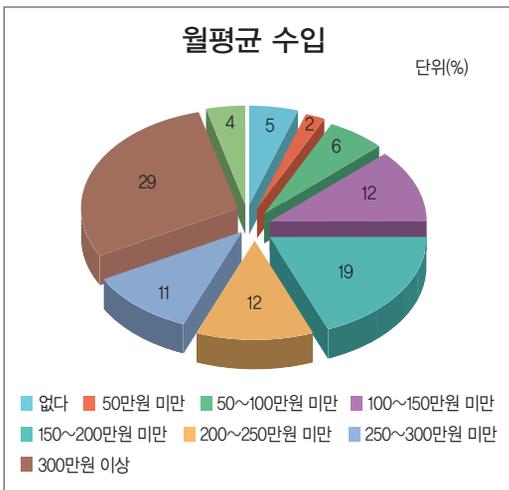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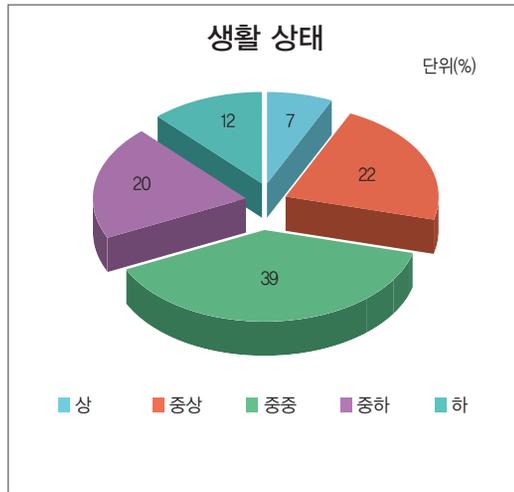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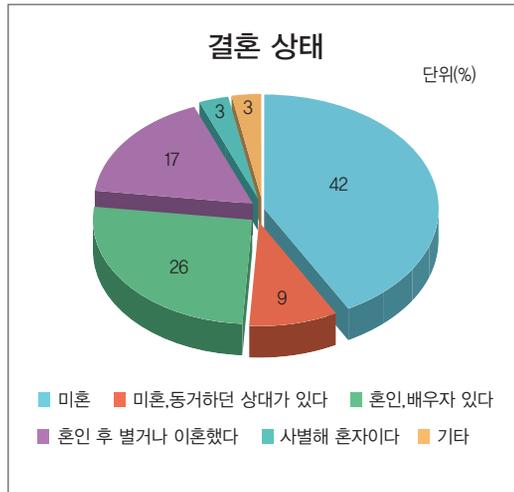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 중 성별은 남성이 95%로 나타났고, 나이는 40~49세가 가장 많았다. 교육정도는 고졸이하, 형기는 3년 이상 5년 미만, 범죄형태는 성폭력이 가장 많았다.

<3년 이상의 형기, 1년 미만의 잔형기를 가진 수형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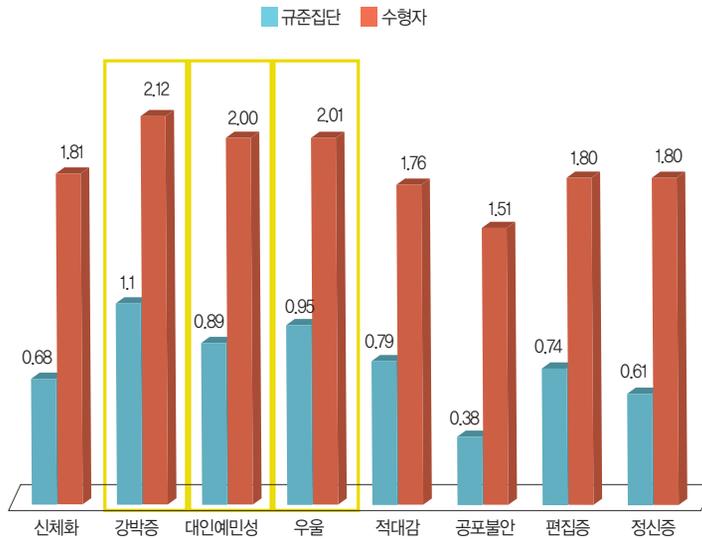
* 정신과 진료 현황 (만기 기준 1년 미만의 기간을 앞둔 자)

(‘11. 6월 현재)

구 분	정신과 진료현황(명)			총 계
	정신분열병	조울병	기타정신병적장애등	
총 계	106,106	7,777	193	376

3)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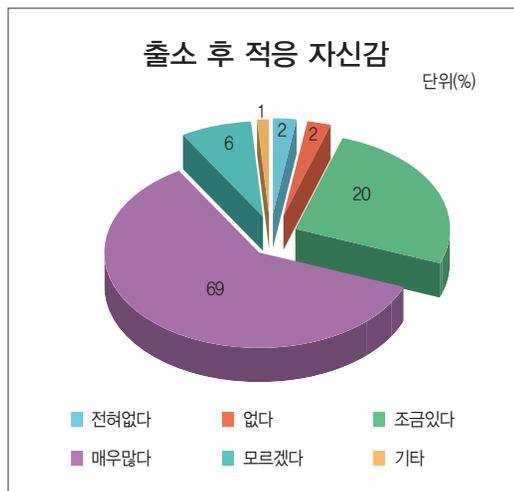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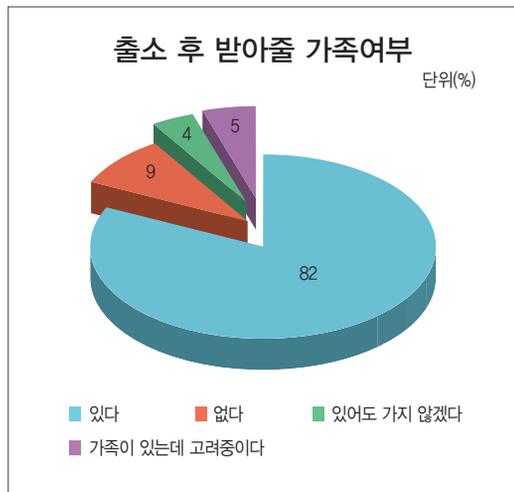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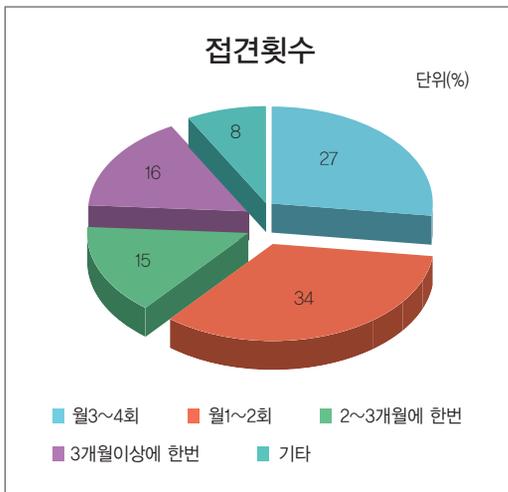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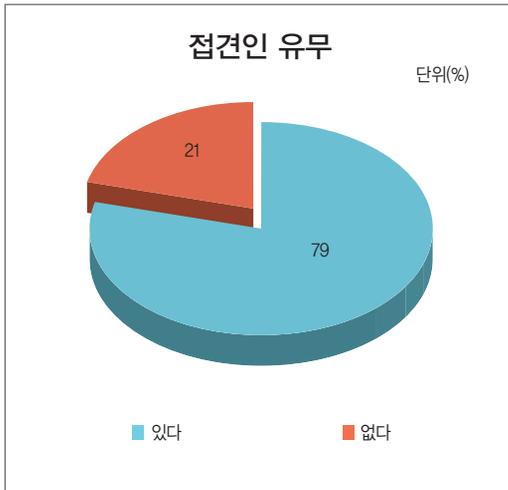
대상자의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간이정신진단검사의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인 대상자들이 한국인 표준집단에 비하여 모든 정신진단 영역에서 증상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강박, 우울, 대인예민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와 한국인 표준집단의 간이정신진단검사

4)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사회적 관계 일반

대상자의 79%가 접견인이 있으며, 64%는 가족이 접견한다고 응답하였다. 월 1-2회 접견이 가장 많았고 82%가 출소 후 받아줄 가족이 있다 하였고, 출소 후 갈 곳이 없는 경우, 친구를 찾아가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교정·교화 프로그램 요구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교정·교화 프로그램 선호·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교정기관에서 법무부에 이루어지는 여러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현황을 파악하였고,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 및 만족도, 요구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1) 교정기관의 교정·교화프로그램

2011년 현재 교정기관의 교정·교화프로그램은 학과교육을 중심으로 정보화교육, 성폭력사범 및 마약류 사범 교화, 인성교육 등 총 17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정기관의 교정·교화프로그램 현황 및 정보

(‘11. 6월 현재)

No.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의 취지	프로그램 내용
1	학과교육	수형자의 학력신장	검정고시 응시
2	방송통신고	소년수형자의 정규교육	고등학교 정규교육
3	독학학위	독학을 통한 학위취득	학사고시 응시
4	전문대학	특화된 전문대학	정보, 식품영양 자격
5	방송통신대학	통신을 통한 대학정규과정	학사자격 취득
6	외국어전문교육	외국어 능력개발	영어, 일본어, 중국어
7	정보화교육	정보화 능력향상	워드프로세서 등
8	성폭력사범 교화프로그램	성폭력사범 교정교화	성 인지변화, 피해자 공감
9	마약류사범 교화프로그램	마약류사범 단약의지제고	마약의 폐해 및 성공사례 등
10	인성교육	수형자에 대한 인성고양	민주적 기본인성 교육
11	상습규율위반 집중교육	규율위반자에 대한 교육	특별 상담 및 교육
12	문화프로그램	고품격 문화의 공유	문화 실습 및 참여
13	자살예방종교상담	자살우려자 사고예방	전문 상담치료
14	아버지·어머니학교	새로운 부모상 발견	자아와 가족의 재발견
15	종교집회	종교를 통한 심성순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16	교리지도	심층 교리공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17	자매결연상담	수형생활 안정 및 적응	자원봉사자와의 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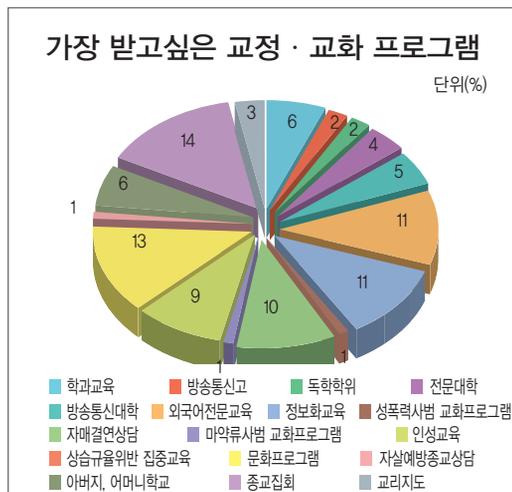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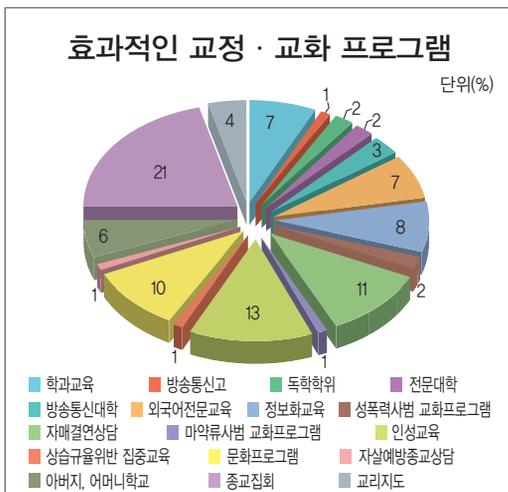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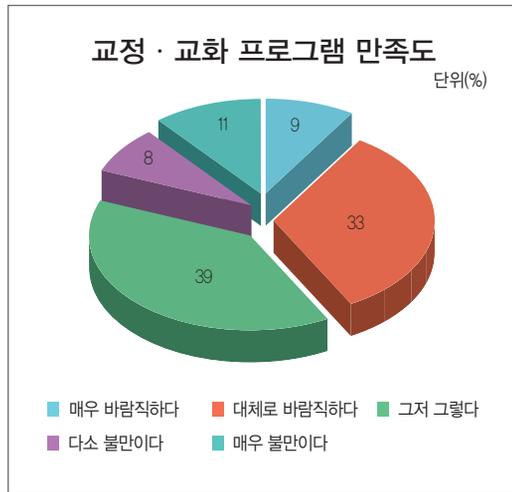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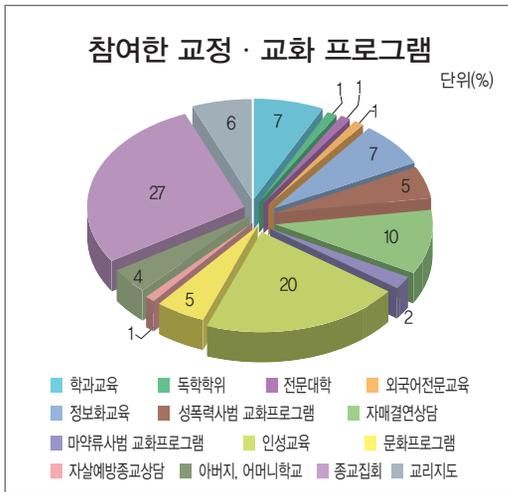


2) 교정기관의 직업훈련 현황

전국 교정시설의 직업훈련은 서울 남부교도소 등 31개 기관에서 제과제빵 등 54개 직종 167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도 총 3,836명의 계획인원 중 정보처리 등 53개 직종 3,725명이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교정·교화 프로그램 선호도 및 요구도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들은 수형생활동안 참여한 교정·교화프로그램과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모두에서 종교집회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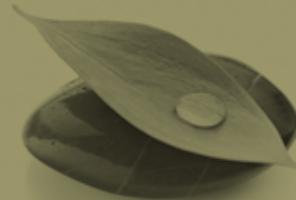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교정·교화 프로그램 선호도 및 요구도



V.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원예식물 및 원예활동 선호도

1.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서의 원예활동에 대한 전반적 인식
2.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원예활동 선호도
3.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원예식물 선호도
4.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원예치료에서의 원예활동, 원예식물
선택과 관련한 고려사항





사회복지예정 수형자의 원예식물 및 원예활동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3년 이상의 형기, 1년 미만의 잔형기를 가진 수형자 3,146명을 대상으로 배부한 총 3,146부의 설문 중 2,211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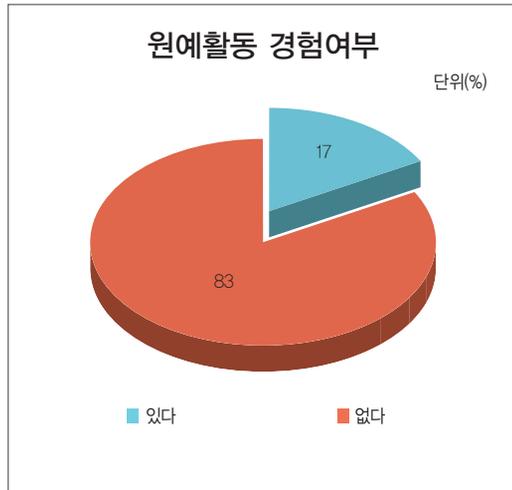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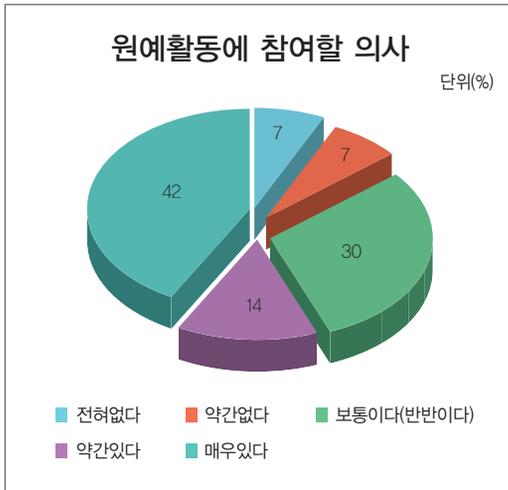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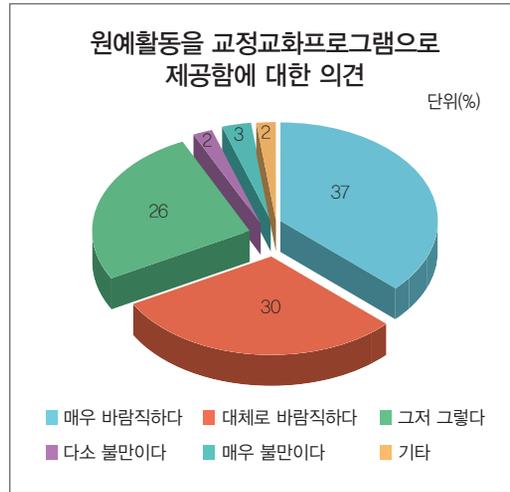
원예치료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교정·교화프로그램으로 원예치료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정·교화프로그램으로 원예치료가 제공된다면 참여하실 생각이 있는지’와 같은 2문항이 제시되었다.

원예활동 선호도는 원예활동 경험 유무, 실내에서 식물가꾸기, 실외에서 식물가꾸기, 식물을 이용한 장식 및 공예활동, 식물을 이용한 요리활동, 산책, 견학, 여행 등의 식물감상활동, 원예와 관련한 지식습득, 기타로 구성된 선호하는 원예활동 범주에 대한 문항과 각 원예활동 범주 내에서 선호하는 세부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7문항을 조사하였고 총 빈도수를 제시하였다.

원예식물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식물을 화훼, 채소, 과수, 곡물, 기타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라 선호하는 세부식물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1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총 빈도수를 제시하였으며 식물은 Park et al.(2002)이 제시한 예를 사용하였다. Park et al.(2002)은 화훼식물을 일년초, 속근초, 구근류, 관엽식물, 다육식물, 난초류, 화목류로 분류하고, 일년초는 코스모스, 샬비어, 팬지, 프리물러를, 속근초는 꽃잔디, 카네이션, 베고니아를, 구근류는 글라디올러스, 수선화, 백합, 히아신스를, 관엽식물은 스킨답서스, 필로덴드론, 고무나무, 크로톤을, 다육식물은 공작선인장, 알로에, 칼랑코에를, 난초류는 한란, 춘란, 심비디움을, 화목류는 아잘레아, 장미, 박태기나무를 대표적 식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채소식물은 잎·줄기·뿌리·열매채소로 구분하고 잎줄기채소는 배추, 상추,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양파, 죽순을, 뿌리채소는 무, 당근, 순무, 우엉, 고구마, 마늘, 열매채소는 완두, 강낭콩, 오이, 호박, 참외, 수박, 가지, 토마토, 고추를 대표적 식물로 제시하였다.

1.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서의 원예활동에 대한 전반적 인식조사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서 원예치료 또는 원예활동이 제공되는 것에 대해 대상자들은 ‘매우 바람직하다 37%’, ‘대체로 바람직하다 30%’로 응답하였고,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서 원예치료 또는 원예활동이 제공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있다 40%’, ‘약간 있다 14%’, ‘반반이다 30%’로 응답하였다. 원예활동 경험이 없는 대상이 83%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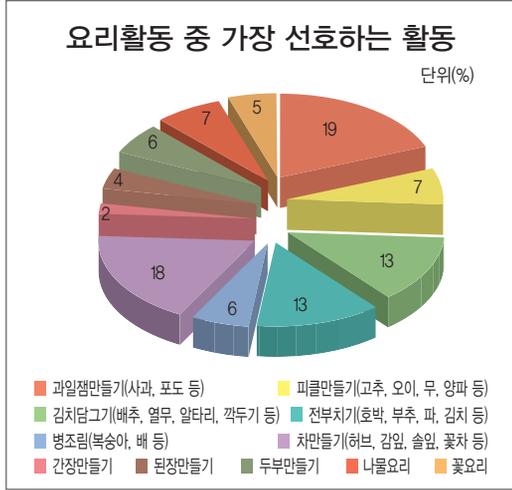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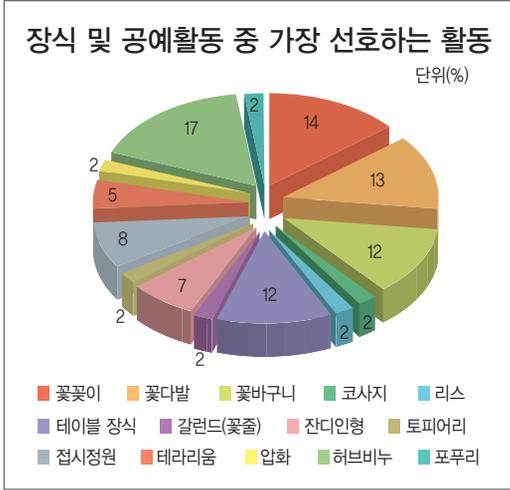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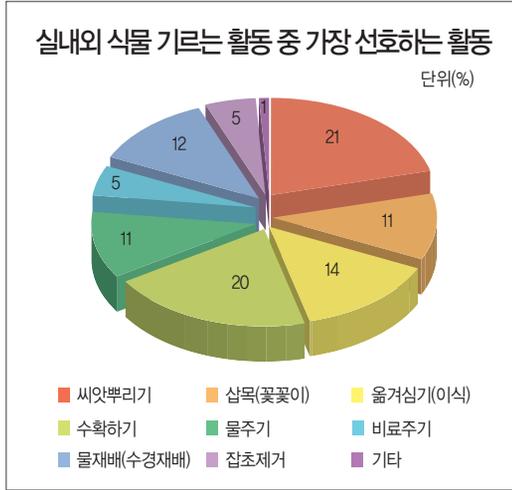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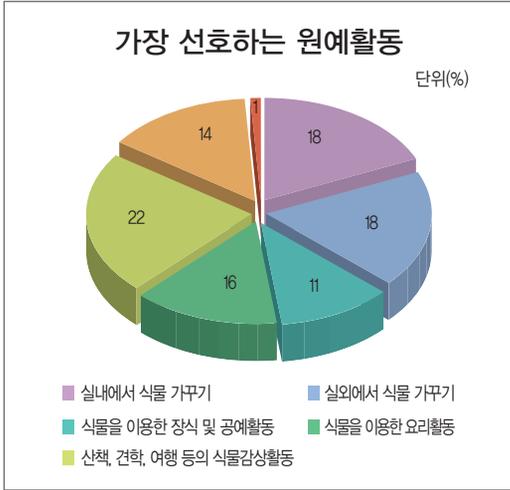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서의 원예활동에 대한 전반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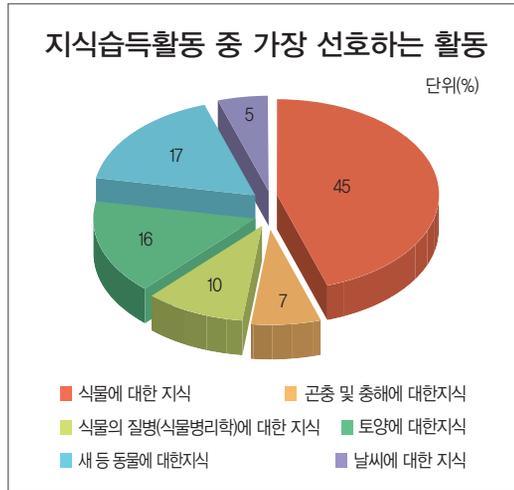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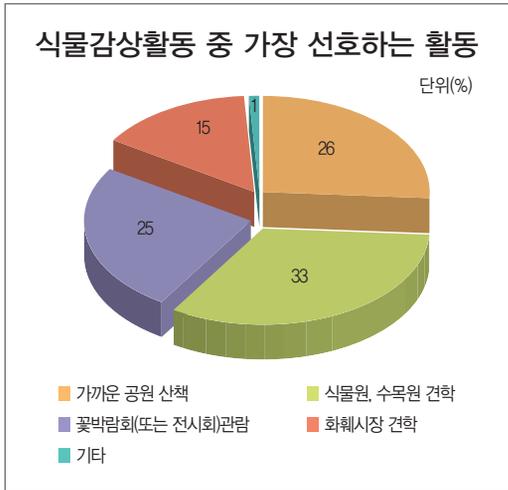
2. 사회복지예정 수형자의 원예활동 선호도

가장 경험해보고 싶은 원예활동은 '산책, 견학, 여행 등의 식물감상활동'이 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내·외에서 식물 가꾸기'가 18%로 동일하게 선호가 높았으며, 식물을 이용한 장식 및 공예활동이 16%로 나타났다. 실내외에서 식물을 기르는 활동 중에서는 '씨앗 뿌리기'가 21%, '수확하기'가 20%로 나타났고, 식물장식 및 공예활동 중에서는 '허브비누만들기'가 17%, '꽃꽂이'가 14%, 식물을 이용한 요리활동 중에서는 '과일잼 만들기'가 19%, '차 만들기'



가 18%, 식물감상활동 중에서는 '식물원 · 수목원 견학'이 33%, 원예와 관련한 지식습득활동 중에서는 '식물에 대한 지식'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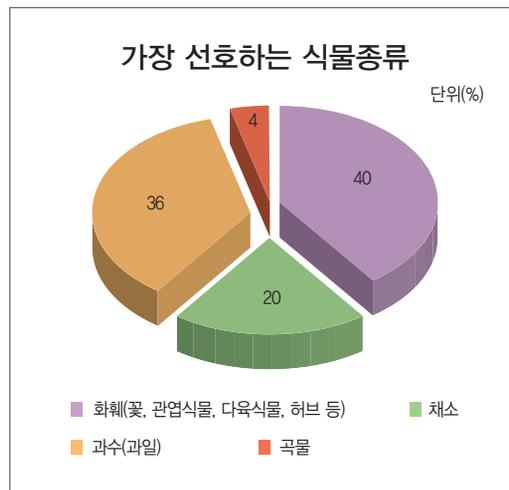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원예활동 선호도

3.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원예식물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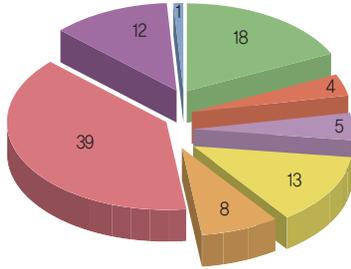
선호하는 식물에 대해 묻는 문항에는 화훼를 가장 경험해보고 싶다고 40%가 응답했고, 좋아하는 화훼식물은 '난초류'를 39%가 선호하였으며, 일년초에서는 '코스모스' 36.5%, 숙근초에서는 꽃잔디 37.8%, 구근류에서는 '백합' 40.5%, 관엽식물 중에서는 '고무나무' 40.5%, 다육식물 중에서는 '알로에' 66.9%, 난초류에서는 '춘란' 51.4%, 화목류에서는 '장미' 64.9%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 중에서는 '열매채소' 43.9%로 가장 선호했고, 잎 채소는 '브로콜리'를 28.4%, 뿌리채소는 '고구마'를 37.2%, 열매채소는 '토마토' 23.0%를 가장 선호하거나 경험해 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화훼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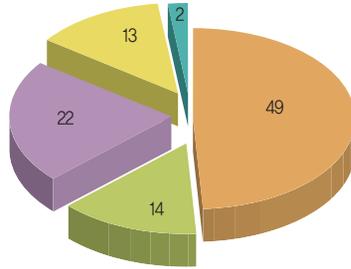
단위(%)



- 일년초
- 속근초
- 구근초
- 관엽식물
- 다육식물
- 난초류
- 화목류
- 기타

가장 선호하는 일년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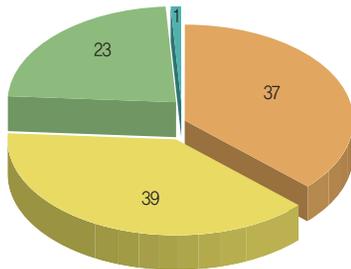
단위(%)



- 코스모스
- 샬비어
- 팬지
- 프리물러
- 기타

가장 선호하는 속근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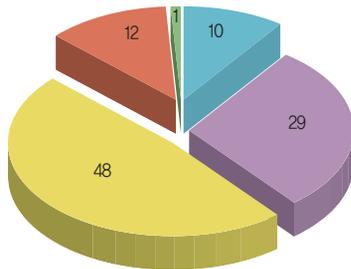
단위(%)



- 꽃잔디
- 카네이션
- 베고니아
- 기타

가장 선호하는 구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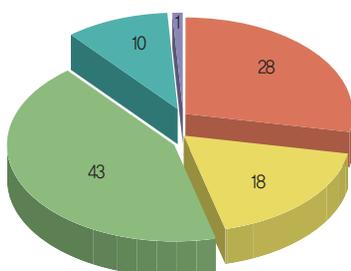
단위(%)



- 글라디올라스
- 수선화
- 백합
- 하이신스
- 기타

가장 선호하는 관엽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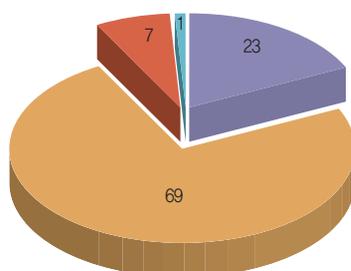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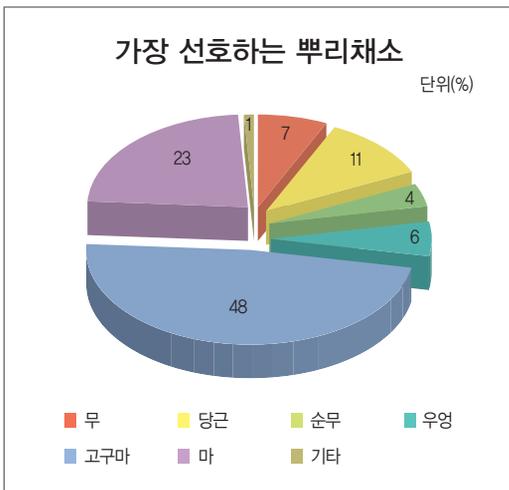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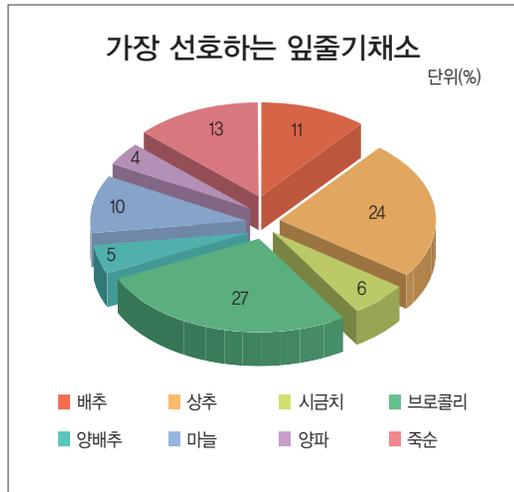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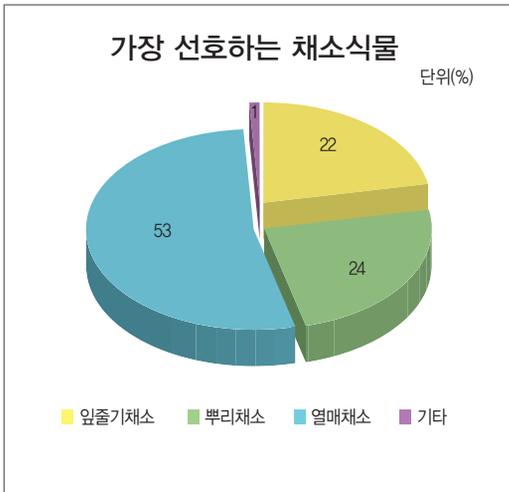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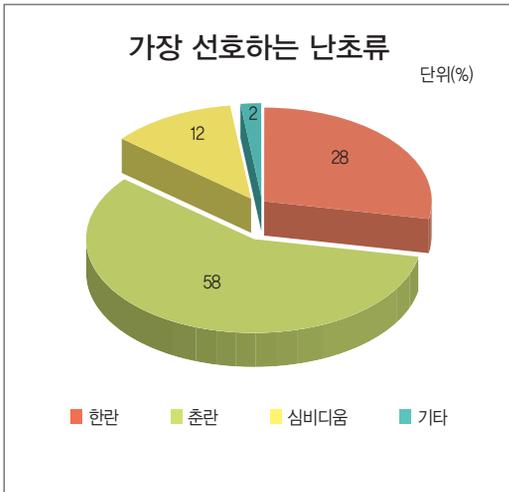
- 스킨답서스
- 필로덴드론
- 고무나무
- 크로톤
- 기타

가장 선호하는 다육식물

단위(%)



- 공작선인장
- 알로에
- 칼랑코에
- 기타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원예식물 선호도



4.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원예치료에서의 원예활동, 원예식물 선택과 관련한 고려사항

1) 원예활동 선택 시 고려사항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교화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일반적 원예활동은 재배활동 위주의 기르기, 장식 위주의 꾸미기, 감상 위주의 느끼기(Suh & Lee, 2004) 등 다양한 원예활동 수행이 가능하나, 본 조사의 대상들은 ‘산책, 견학, 여행 등의 식물감상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실내외에서 식물가꾸기’와 ‘식물을 이용한 장식 및 공예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책, 견학, 여행 등의 식물감상활동’에서는 가까운 공원, 꽃박람회, 화훼시장 견학 보다 식물원·수목원 견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형자라는 신분과 교정기관이라는 공간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소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의 식물원·수목원을 견학하는 활동을 구성하기에는 보안상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식물원, 수목원을 방문하는 주된 목적이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위함이라는 Kwon et al.(2012)의 연구와 실외원예활동에서 자연환경은 심리적인 ‘벗어나기(being away)’로 경험된다(Choi, 2011)라는 보고와 정원을 심리적인 긴장을 완화시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경관을 제공하는 공간(Choi, 2003)으로 볼 때, 교정기관 내에서 원예치료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가능한 자연환경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되도록 초기 세팅하거나 수형자들과의 활동에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원예치료가 Maslow의 동기육구이론 2단계 육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요인(Matsuo, 1996)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선호 순위로 나타난 ‘실내외에서 식물 가꾸기’ 활동을 교정기관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식물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실외의 경우, 노지가 확보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최근 교정시설이 아파트 형태의 인공지반으로 이루어진 곳도 있어 노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실내의 경우처럼 상자텃밭, 자루텃밭 등과 같은 용기를 적극 활용하여 식물 가꾸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상자들이 씨뿌리기, 수확하기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파종에서 수확까지 식물재배·관리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식물을 이용한 장식 및 공예활동’에서는 허브비누, 꽃꽂이, 꽃다발, 테이블 장식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꽃꽂이와 꽃다발 활동을 위해서는 절화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 보다는, 원예치료라면 반드시 살아있는 식물의 재배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Relf, 2006), 원예치료의 주된 치료적 양상은 식물을 돌보는 것이므로 살아있는 식물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양육한 식물의 결과물로 예술작업이나 만들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Lee(2006)의 견해와



같이 식물 기르기 과정에서 식량작물이나 채소 뿐만 아니라 초화를 이용하여 이를 수확한 후, 장식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허브비누 만들기 활동도 직접 재배한 허브를 이용하고, 가든파티 등을 계획하여 테이블 장식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식물을 이용한 요리활동에서는 ‘과일잼 만들기’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과일잼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수재배 및 설탕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과수재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과일 및 설탕의 반입은 발효를 통한 양조(釀造)의 위험이 있어 선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만들기’는 위에서 언급한 허브비누 만들기와 마찬가지로 재배한 식물을 이용하여 차를 만들어 음용하도록 식물의 선택 및 수확, 이용 시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식물 기르기나 장식 및 공예활동에 사용되는 도구 및 자재를 살펴보면 가위, 삽, 모종 삽, 호미, 끈, 와이어 등 교정기관 내 반입이 불가하거나 반입 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물품들이 많은 관계로 그 종류를 최소화 하고 활동 전후 갯수 및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상자털발을 이용할 경우, 상자를 쌓아서 높아진 곳을 통하여 교정기관 담을 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능한 담장에서 떨어진 곳에 상자털발을 위치하게 해야 한다.

2) 원예식물 선택 시 고려사항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교화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일반적 원예식물은 화훼, 채소, 과수, 곡물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응답대상 수형자들은 화훼(꽃, 관엽식물, 다육식물, 허브 등)를 가장 경험해보고 싶다고 응답했다. 다양한 화훼식물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독성이 있는 식물은 지양하고(Suh et al., 2000; Son et al., 2006) 꽃꽂이, 꽃다발 등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채소 중에서는 ‘열매채소’를 가장 선호했으며 특히 토마토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잎 채소에서는 ‘브로콜리’, 뿌리채소에서는 ‘고구마’를 가장 선호하거나 경험해 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는 생식이 가능한 것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교정기관 내에서는 조리를 위해 전기를 포함한 모든 열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과수에 대한 선호도는 조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과수가 다년간의 재배를 전제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정기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수행된다면, 매년 수확이 가능한 과수의 식재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포도나 매실 등 양조(釀造)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교정기관에서 반입을 철저히 제한하므로 과수 선택 시 고려되어야 한다.



VI.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모델

1.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모델

2.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재배활동 중심

심리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3.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정원활동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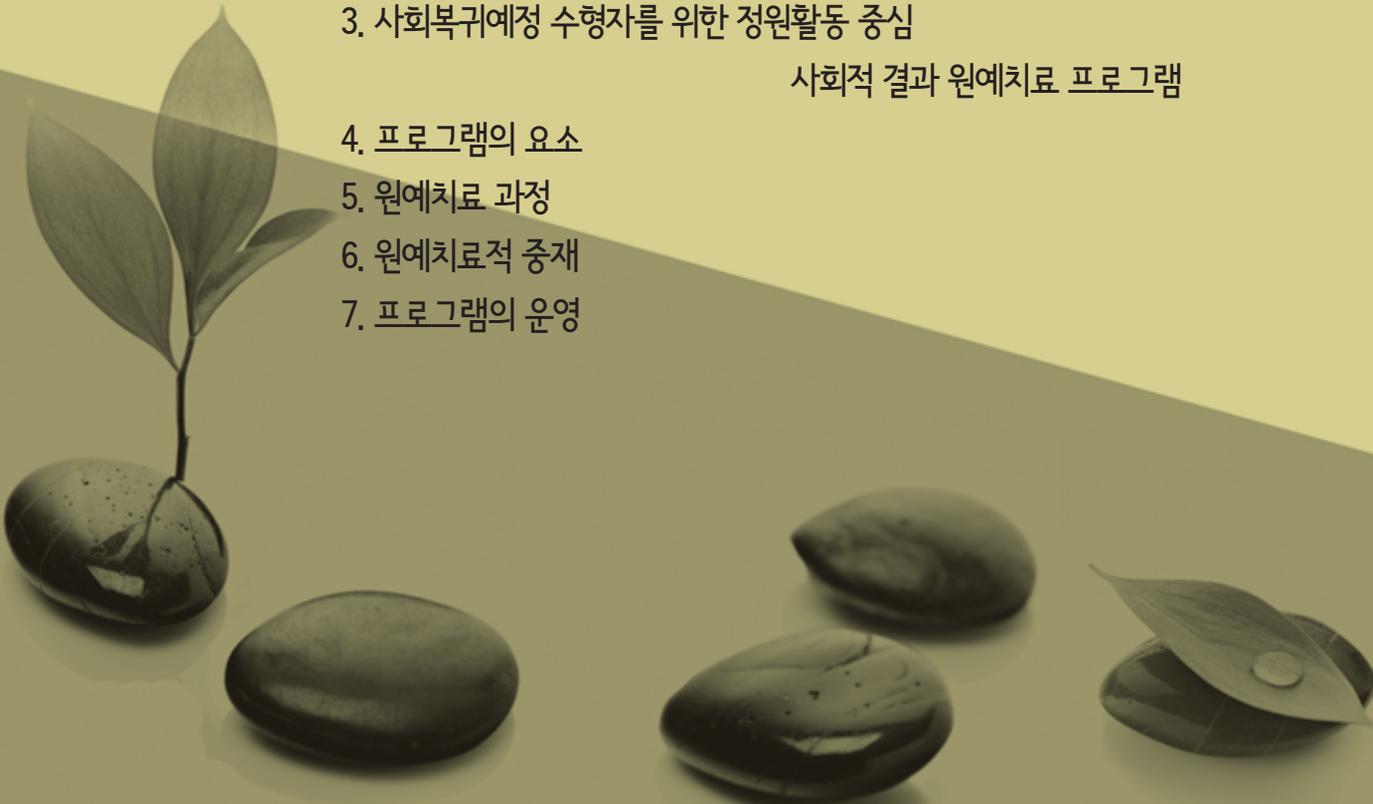
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4. 프로그램의 요소

5. 원예치료 과정

6. 원예치료적 중재

7. 프로그램의 운영





1. 사회복지예정 수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모델

사회복지예정 수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란 사회복지를 예정하고 있는 수형자들의 성공적 사회복지를 돕기 위하여 그들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향상 시킬 목적으로 원예치료사에 의해 촉진되는 식물 및 원예활동을 이용하는 과정이다.

본 모델은 심리적 결과와 사회적 결과의 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두 프로그램을 모두 수행하고자 한다면 심리적 결과 모델의 선 수행 후 사회적 결과 모델을 연이어 적용하는 장기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심리적 결과 모델이 선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정신력이 약화되어 외부의 자극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는 내향적 참여 능력을 가졌거나, 자신의 주변에 관심을 두고 관찰하되 참여하지는 않는 정서적 참여 능력 단계의 대상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집단 활동이 더 위협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내적,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의 접근을 먼저 수행하여 대상자의 심리적 능력을 향상 시킨 후, 사회적 측면의 중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본 모델은 원예치료사, 대상자, 원예활동의 세 가지 유형(有形)의 주요소를 가지고 원예치료과정을 따를 때 성립된다. 이 원예치료과정은 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를 의미하며 회기별 원예치료과정과 전체 원예치료과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이상미, 2006). 원예치료과정은 자료 수집을 통한 대상자 건강상태 및 건강요구를 확인하는 단계인 사정(assessment), 치료문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치료목적과 목표를 수립하고 활동계획을 세우는 단계인 계획(planning), 계획한 활동을 수행하고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인 실행(implementation), 치료목적의 성취도 및 활동수행에 따른 대상자 변화를 평가하는 단계인 평가(evaluation)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서정근과 이상미, 2004).

각 전 후의 단계는 매우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반드시 그 단계가 제시된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단계를 건너뛰거나 되돌아가기도 하는 복잡한 형태의 구조적 과정을 가진다. 이 원예치료과정은 원예치료가 원예활동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하면서 필수적인 이유라고 여겨진다.

본 모델은 원예치료의 신체, 인지, 심리, 사회의 일반적 효과 중에서 심리, 사회적 효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심리·사회적 결과 도출을 위한 치료적 중재가 적용되어야 한다. 치료의 전 과정동안 원예치료사는 온정, 수용, 경청, 존중, 공감, 긍정적 강화 및 보상, 동기부여와 같은 피드백 등 긍정적 관계와 관련 있는 지지전략과 통찰, 인지적 학습, 자기수용과 같은 학습전략, 공포, 최면, 모델링, 실행, 현실검증, 훈습 등과 같은 행동전략을 공통전략으로 사용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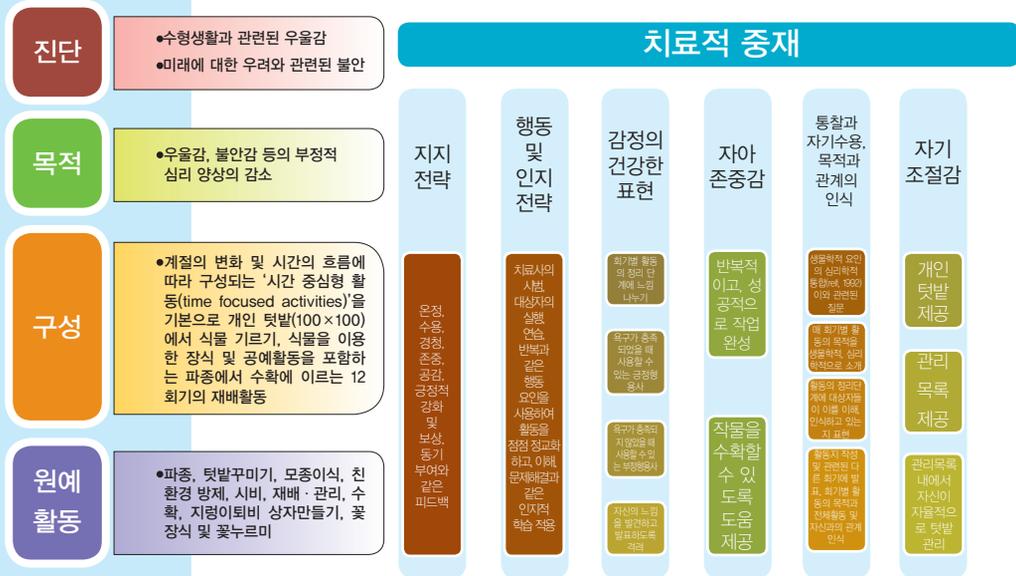
있다. 심리적 결과와 관련한 치료적 증재로는 목적과 관계의 인식, 감정의 건강한 표현, 자기 효능감 증가, 자아존중감의 향상, 생물학적 요인의 심리학적 통합 등이 가능하며 사회적 결과와 관련한 치료적 증재로는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모델은 집단활동으로 계획되어 집단원예치료와 관련한 치료적 증재가 요구된다.

본 모델의 수행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운영방안으로는 프로그램의 수행 장소와 분위기, 프로그램 수행 시간, 집단의 크기 및 구성, 집단의 구조성, 집단의 개방성, 집단 한계와 규칙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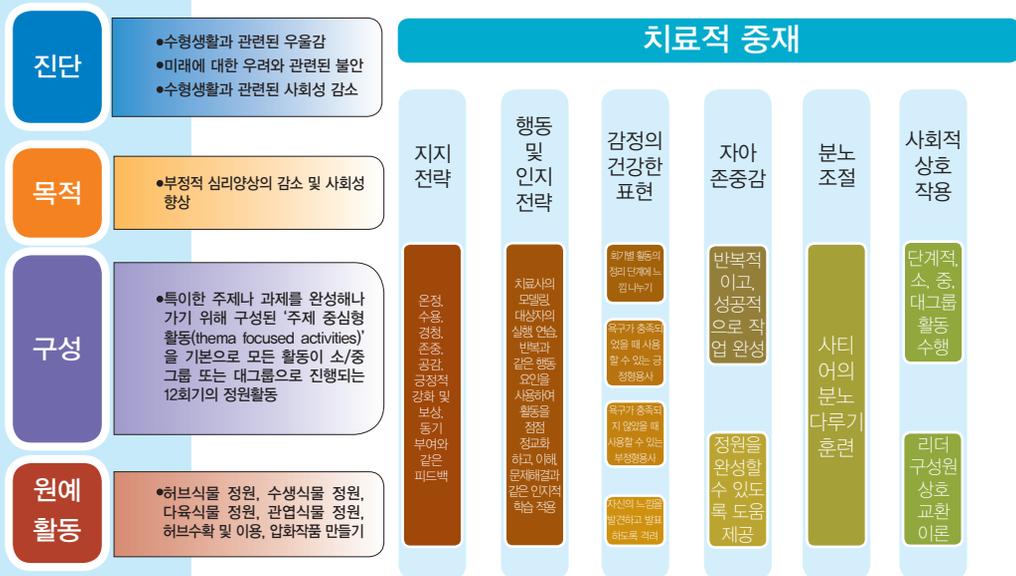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모델 구조도

전기단계 :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원예치료 **심리적** 결과 모델



주 1회, 3개월 1회기~12회기

후기단계 : 사회복귀예정 수형자의 원예치료 **사회적** 결과 모델



주 1회, 3개월 13회기~24회기



2.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재배활동 중심 심리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재배활동 중심 심리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모델의 일부로 사회복귀를 예정하고 있는 수형자들의 우울감, 불안 감소 등과 같은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식물의 식재, 관리, 수확, 이용과 관련한 재배활동을 중심으로 원예치료사에 의해 촉진된다.

3.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정원활동 중심 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정원활동 중심 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모델의 일부로 사회복귀를 예정하고 있는 수형자들의 대인예민성감소, 사회성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중·소형의 주제정원 조성활동을 중심으로 원예치료사에 의해 촉진된다.

4. 프로그램의 요소

본 프로그램은 대상자, 원예치료사, 식물 및 원예활동의 세 가지 유형(有形)의 주요소를 가진다.

(1) 대상자

본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사회복귀를 예정하고 있는 수형자로 광의의 대상과 협의의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는 입소시점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소가 가능한 모든 수형자들이 광의의 대상일 수 있으며, 반면 실제 사회복귀를 앞두고 생계 및 취업, 가정문제, 피해자 관련문제, 대인관계 등에 대해 염려하고 이를 준비하는 '출소예정자'를 협의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단순히 '출소예정자'가 아니라 원예치료가 필요한 협의의 '출소예정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기간이 사회복귀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물리적 기간을 가지는 3년 이상의 형기, 1년 미만의 잔형기를 가진 자로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수형자뿐만 아니라 유사 교정기관(보호관찰소, 소년원, 대안학교 등) 수용자 또는 심리적 건강 증진이 요구되는 다양한 대상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다.

(2) 전문가(원예치료사)

원예치료사는 원예치료 대상자와 함께 원예치료를 이끌어가는 존재로서 원예치료의 주체라 할 수 있다. 원예치료사는 자발적, 주도적 역할, 치료적 의도를 가지고 치료에 임해야 하며, 원



예치료사의 역량이 원예치료의 성패를 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상미, 2006). 그러나 '원예치료사'라는 명칭은 자격의 명칭이라기 보다 '원예치료과정을 촉진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적 명칭으로 본 매뉴얼에 사용하고자 한다.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재배활동 중심 심리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과 정원활동 중심 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촉진시킬 수 있는 원예치료사는 수형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회복귀를 예정하고 있는 수형자들의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교화개선모형의 철학적 기초인 의료모형, 적응모형, 재통합 모형과 주요 교정치료기법으로써의 정신역동적 접근법, 경험적이고 관계지향적 접근법, 인식적·행동적 성향의 행동상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울감, 불안감 등의 심리적 문제의 완화와 고립감, 사회성의 저하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완화를 목적으로 식물과 원예활동을 이용함에 있어 이 이론에 근거한 치료 및 접근 전략을 적용,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집단의 형태로 설계됨으로 집단원예치료를 이끄는 원예치료사가 가져야 할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집단원예치료를 이끄는 원예치료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집단지도자의 자질로는 인간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 개별적 행동의미를 명료화시키는 능력, 개입 및 상호작용의 속도와 깊이를 조절하는 능력이 요구되며(윤관현 등, 2006) 집단치료의 운영 경험이 있는 치료사의 경우, 집단 내 상호작용 및 개별 대상과 집단과정의 목적 달성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집단에서 야기되는 우발적인 문제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주치료사 혹은 보조치료사의 집단치료 운영의 경험여부가 치료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인간에 대한 신뢰와 관심, 치료자 자신에 대한 평가와 이해, 용기 있는 태도, 창조적이고 융통성 있는 태도, 인내하는 자세, 유머감각과 기관의 기능을 활용하는 기술, 감정을 다루는 기술, 현실을 활용하는 기술, 집단관계를 지지하고 이용하는 기술(옥금자, 2007)을 들 수 있다. 집단관계를 지지하고 이용하는 기술로 리더십 기술(Corey and Corey, 2007)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적극적 경청, 반영하기, 명료화, 요약하기, 촉진시키기, 공감하기, 해석하기, 질문하기, 연결짓기, 직면시키기, 지지하기, 저지하기, 진단하기, 모범보이기, 제안하기, 솔선수범하기, 종결짓기 등의 방법이다.

건강한 협동 전략을 가르치기 위해 가능한 추론 즉 상징적 의미를 찾아내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상자들이 서서히 끌어 들여지게 하기 위하여 활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Gabaldo, et al. 2003). 이러한 자질 및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사정, 계획, 실행, 평가의 원예치료과정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원예치료사의 역할을 주치료사와 보조치료사로 나누어 보다 실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 치료사는 원예치료과정인 대상자를 사정하고 프로그램 전체를 계획, 실행하며 회기별 평가 및 프로그램 완료 후 최종평가를 수행할 수 있어야하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의 전반적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전반적 관리라 함은 활동의 주 진행을 기본으로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기관관계자와의 협의, 회기별 활동계획안, 수정일지 작성, 회기별 활동 평가서 작성, 보조치료사 평가서 취합, 보조치료사의 교육 및 관리, 예산 설정, 이와 관련된 재료의 신청 및 구비를 포함한다. 보조치료사는 주 치료사의 활동 진행에 맞추어 재료의 준비, 분배와 대상자의 활동을 돕는다. 집단치료의 경우, 활동 도중 주 치료사가 대상자와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고받거나 활동을 도와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때 보조치료사는 대상자의 활동을 돕는 동시에 적절한 치료적 중재를 수행하여야 하며 도구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회기별 활동의 평가과정에도 참여하여 주 치료사가 파악하지 못했던 대상자, 활동, 치료사에 대한 구두 및 기술 평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정기관에서 활동하는 원예치료사는 복장 등 외모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의복에 있어서는 편한 작업복을 착용하나 살과 몸매가 드러나는 옷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팔은 가능하지만 소매가 없는 상의, 반바지, 치마는 삼가하고 팀의 경우, 팀 복 통일을 권장하며 너무 화려하거나 독특하여 관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복장을 삼가한다.

신발은 편한 작업화를 착용하고 정장구두, 하이힐, 발등, 발가락이 드러나는 신발은 피하고 무난한 양말 착용을 권장한다.

단정한 머리 모양을 하고, 긴 머리의 경우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묶는 머리를 권장한다. 모자를 착용할 수 있으나 모자의 창으로 인하여 대상자와 눈맞춤이 어렵거나, 앉아서 설명하는 치료사를 대상자가 위에서 바라보는 구도의 경우, 대상자가 모자 창만 쳐다보게 될 수도 있어 유의한다.

가능한 손톱은 기르지 않으며 매니큐어 등의 장식을 지양한다. 화장도 진하고 화려하지 않고, 향기가 진한 화장품, 향수는 사용하지 않는다. 기타 반지, 팔찌, 발찌, 귀걸이, 목걸이, 머리핀 등의 악세사리는 가능한 피하고, 선글라스도 대상자와의 눈맞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식물 및 원예활동

원예활동은 원예치료에서의 치료활동으로써 치료과정에서 치료목적 달성을 위한 치료도구로 사용되어지며, 인간 삶과 연관시킨 끝없는 의미부여가 요구되어지는 비유적 대상이다(서정근과 이상미, 2004). 식물과 원예활동은 본 프로그램의 목적,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지역, 형명 등), 대상자의 식물 및 원예활동 선호도, 요구도, 지식 및 경험정도, 대상자의 크기, 사회



적 능력과 이와 관련된 요구도 등이 고려되어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재배활동 중심 심리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활용할 원예활동은 화훼류와 채소류를 주로 사용하여 식물의 식재, 관리, 수확, 이용과 관련한 '시간중심형' 재배활동이 이루어진다. 심리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재배활동 중심으로 구성한 다른 이유는 사회복지예정 수행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모델에서 심리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전반부에 수행되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연중 전반부로 보았을 때, 전반부에 파종부터 수확, 이용까지 경험이 가능한 재배활동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정원활동 중심 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화훼류를 사용한 중·소형의 주제정원을 만들어보고, 이 과정에서 식물의 식재, 관리, 수확, 이용(장식)과 관련한 재배활동을 도입한 '주제중심형' 프로그램 활용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예정 수행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모델에서 후반부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결과 모델 또한 연중 후반부에 재배 가능한 식물을 이용하여 재배활동 위주로 수행할 수도 있으나, 보다 다양한 원예활동을 소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위하여 주제정원만들기 활동을 이용하기로 한다.

5. 원예치료과정

원예치료는 원예치료사, 대상자, 식물 및 원예활동의 세요소를 가지고 원예치료과정을 따를 때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원예치료과정은 원예치료의 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이상미, 2006)를 의미하며 회기별 원예치료과정과 전체 원예치료과정으로 나누어 질수 있다. 원예치료과정은 자료 수집을 통한 대상자 건강상태 및 건강요구를 확인하는 단계인 사정(assessment), 치료문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치료목적과 목표를 수립하고 활동계획을 세우는 단계인 계획(planning), 계획한 활동을 수행하고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인 실행(implementation), 치료목적의 성취도 및 활동수행에 따른 대상자 변화를 평가하는 단계인 평가(evaluation)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서정근과 이상미, 2004).

각 전 후의 단계는 매우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반드시 그 단계가 제시된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단계를 건너뛰거나 되돌아가기도 하는 복잡한 형태의 구조적 과정을 가진다. 이 원예치료과정은 원예치료가 원예활동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하면서 필수적인 이유이다.



(1) 사정(Assessment)

사회복귀예정 수행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정의 내용은 대상자의 이름, 성별, 연락처, 주소, 가족관계, 교육수준, 종교 등과 같은 일반적 특성과 우울감, 무력감,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양상과 관련된 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 대인예민성, 적대감, 대인관계, 가족관계, 의사소통, 사회적응, 협동력 등과 같은 사회적 양상과 관련된 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로, 면접, 관찰 정보공유 등의 방법으로 주관적, 객관적 자료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수집한다. 또한 원예활동에 대한 지식, 경험, 선호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이러한 자료 수집 및 연구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2) 계획(Planning)

① 진단(Diagnosis)

진단이란 사정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원예치료로써 치유, 소멸, 유지, 향상 가능한 대상자의 치료문제를 확인하여 명료화하는 과정으로 치료과정에서 통용되는 표준화된 언어이다(서정근과 이상미, 2004). 본 프로그램에서는 수행생활로 인하여 대상자의 심리적 양상과 관련하여 우울감, 무력감, 불안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고, 사회적 양상과 관련한 대인예민성, 적대감, 대인기피, 고립감, 공격성, 사회성의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양상에서의 문제는 심리적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결과 모델 또한 심리적 결과 모델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본 모델에서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진단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모델의 활용 시에는 심리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단독으로 진단 내릴 수도 있다.

진단은 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이 함께 서술되어야 하므로(서정근과 이상미, 2004), 심리적 결과 프로그램에서는 ‘수행생활과 관련된 우울감, 불안 등의 심리적 건강의 저하’로, 사회적 결과 프로그램에서는 ‘수행생활로 인한 우울감 및 사회성 감소와 관련한 심리·사회적 건강의 저하’로 진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② 치료목적 및 목표(Treatment goal and objective)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대상자의 심리적 양상과 관련된 우울감의 완화 및 사회적 양상과 관련된 사회성의 증가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인 것을 설정하고, 목표는 각 회기별 활동과 목적에 따라 대상자가 수행하게 될 행동을 중심으로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긍정적 문장으로 설정한다. 본 가이드에서는 ‘우울감, 불안 감소 등과 같은 심리적 건강 증진’, ‘대인예민성 감소, 사회성 증가와 같은 사회적 건강 증진’, ‘긍정성, 사회성 증가 등과 같은 심



리·사회적 건강 증진'으로 치료목적을 제시하고, 치료목표는 매회기별 원예활동에 따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내용은 IV. 사회복귀예정 수행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에서 제시 하고자 한다.

③ 활동계획(Activity planning)

활동계획은 목적에 따른 치료적 중재를 포함한 원예활동인 원예치료활동 수행계획으로 첫 회기부터 마지막 회기까지 수행되어질 전체 원예활동과 회기별 원예치료활동계획으로 나누어 계획 되어질 수 있다. 회기별 원예치료활동은 도입, 전개, 정리의 단계를 가지고 서술하되 내용은 과제분석, 활동분석 등에 근거하여 대상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에 따라 단계 또는 세분화, 단순화하여 제시한다. 또한 각 단계별 원예활동과제에 따른 치료적 중재 목적에 따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계획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사회복귀예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재배활동과 심리적 결과를 중심으로-(농진청, 2013)'와 '사회복귀예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정원활동과 사회적 결과를 중심으로-(농진청, 2013)'에 수록되어있다.

(3) 실행(Implementation)

실행은 계획한 원예활동을 수행하고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점검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치료사의 순발력, 뛰어난 진행감각, 해박한 원예지식, 숙련된 원예기술,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일관된 치료의도 실행 등과 같은 치료사 역량이 가장 많이 발휘되는 단계이다.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원예치료에서는 교정기관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며, 활동이 기관 내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하고 재료나 도구의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실행과정에서 발생 가능 한 폭력행위나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한 합의 및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평가(Evaluation)

평가는 설정된 목적이 성취되고 있는 경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원예치료 수행에 따른 대상자의 변화를 평가하는 것으로 매 회기별 활동 마다 또는 전체 활동 완료 후 확인하고 기록하는 단계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사정단계에서 사용하였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완료 시점이나 이후에 전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매 회기별 평가 또한 정성적, 정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향후 추적조사를 계획할 시 이를 위한 동의서가 요구된다. 매 회기별 기록 평가에 사용된 평가지 형식과 내용은 '수행자 대상 원예치료 프로그램 사례집 재배활동과



심리적 결과를 중심으로- (농진청, 2013)', '수형자 대상 원예치료 프로그램 사례집 정원활동
과 사회적 결과를 중심으로- (농진청, 2013)'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6. 원예치료적 중재

본 프로그램에서는 전 과정동안 사용되어질 공통중재, 심리적 결과와 관련한 중재, 사회적
결과 및 집단원예치료를 위한 중재가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1) 전 과정동안 사용되어질 공통적 중재

치료의 전 과정동안 원예치료사는 온정, 수용, 경청, 존중, 공감, 긍정적 강화 및 보상, 동기부
여와 같은 피드백 등 긍정적 관계와 관련 있는 지지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생물학적
요인의 심리학적 통합(Relf, 1992)과 이와 관련된 질문을 제공하여 통찰과 자기수용이 가능하
도록 도우며, 매 회기별 활동의 목적을 생물학적, 심리학적으로 소개하고 활동의 정리단계에 대
상자들이 이를 이해, 인식하고 있는지 표현하게 하고, 이해, 문제해결과 같은 인지적 학습과 같
은 학습전략을 적용하며 모델링, 실행, 연습, 현실검증 등과 같은 행동전략을 사용하여 점점 정
교화 한다.

(2) 심리적 결과와 관련한 치료적 중재

심리적 결과와 관련한 치료적 중재는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재배활동 중심 심리적 결
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중재이며, 정원활동 중심 사회적 결과 원
예치료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심리적 결과와 관련한 치료적 중재를 사용하되 사회적 결
과와 관련한 치료적 중재를 병행하여야 한다.

① 목적과 관계의 인식(Sense of Purpose/Connectedness)

사회복귀를 앞두고 대상자들은 사회로의 재배치(relocation)와 삶의 역할 변화에 대하여 불
안 또는 쇠약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이에 치료과정동안 행하게 되는 모든 활동은 현재의 대상
자 증상 및 상황을 해결하고 향후 사회복귀 성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후 활동도 유기적 연관성을 가져야 하므로, 작성한 활동
지를 관련된 다른 회기에 발표하게 하여 회기별 활동의 목적과 전체 활동 및 자신과의 관계를
인식하도록 하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원예치료사
나 기관관계자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상의, 토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② 감정의 건강한 표현 (Healthy Expression of Feelings)

심리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 대상자가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감정의 건강한 표현을 위하여 회기별 활동의 정리 단계에 느낌 나누기를 수행하며, 자신의 느낌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하여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긍정형용사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부정형용사 목록을 제공하여 이를 보고 자신의 느낌을 발견하고 발표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③ 자아존중감(Self-Esteem)향상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본 프로그램의 심리적 결과인 우울감의 완화를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자아존중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성공을 통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특히 의미있는 과제의 성공적인 완성과 반복된 성공의 경험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해서는 매번 다른 생소한 활동과 소재를 이용하기 보다는 반복적이면서도 지루하지 않도록 활동을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작업을 완성하고 작물을 수확하여 유능감을 높이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④ 자기 효능감(역량감)(Personal Causation) 향상

오랜 수형생활을 통해 개인은 일반적으로 환경적 요인(방의 온도, 공기의 냄새, 소음수준), 시간관리(식사, 목욕, 미리 계획되어진 활동)와 같은 조절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자기 조절력은 과제의 자발적 수행과 완결, 성공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능력감을 형성시키고 이는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관련이 있게 된다. 식물 심기와 유지에 관련된 자발적, 계획적 활동은 향후 결과물의 창출 및 수확과 같은 긍정적인 미래를 위한 시도와 같은 긍정적 자기 자신을 보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기후나 질병으로 인해 식물 손상이나 죽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그들의 조절능력 밖에 있는 외적사건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좌절(실패)에 대한 저항력(frustration tolerance)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자기조절감을 가지도록 개인 텃밭과 관리목록을 제공하여 관리목록 내에서 자율적으로 텃밭을 관리하도록 격려한다. 이때 모종 이식 후 매 회기 마다 수확할 수 있는 산물은 자발적으로 수확하도록 하고, 교정기관의 허가를 얻어 각자 방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3) 사회적 결과와 관련한 치료적 중재

사회적 결과와 관련한 치료적 중재는 사회복지예정 수행자를 위한 정원활동 중심 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중재이며, 재배활동 중심 심리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심리적 결과와 관련한 치료적 중재를 주로 사용하고 사회적 결과와 관련한 치료적 중재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① 사회적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무조건의 협동 활동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의 정신력에 따른 참여형태가 반드시 고려 (Stigsdotter and Grahn, 2002)되어야 한다. 만약 정신력이 극히 약화되어 외부의 자극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내향적 참여 능력을 가졌거나, 자신의 주변에 관심을 두고 관찰하되 참여하지는 않는 정서적 참여 능력을 가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단 활동이 더 위협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성에 대한 압박감을 감소하기 위하여 일반적 활동과 관련된, 자연스럽게 제공된 주제에 대한 담화 나누기를 실시하고 전문가(원예치료사)는 이러한 담화 속에서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 다른 이들이 활동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거나 식물에 관심을 두고 관찰하도록 유도한다.

대상자가 집단에 참여하여 사물을 관찰하거나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단계인 적극적 참여능력을 가진 대상자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주거나 그룹토의를 위한 주제를 제안하도록 유도하고 구성원으로서 역할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공헌함이 있음을 느끼도록 돕는다. 또한 상호작용을 격려하고자 할 때는 재료와 공급물을 나누고 돕고 보조하도록 준비한다. 따라서 심리·사회적 결과 모델을 수행함에 있어 대상자의 내적, 정서적 상태에 대한 접근을 우선적으로 수행한 후,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복지예정 수행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모델은 집단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재료와 공급물을 제공함에 있어 활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과 질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전기단계인 심리적 결과 모델에서는 개별 텃밭을 제공하거나 독립적 재료를 준비하는 등의 개별 활동을 진행하고, 사회적 결과 모델은 심리·사회적 결과 모델의 후기단계로, 전기단계인 심리적 결과 모델에서 이미 집단 원예치료의 시작단계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집단발달의 다음 단계인 갈등과 작업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심리적 결과 모델과 사회적 결과 모델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집단발달의 전단계인 시작, 갈등, 작업, 종결단계를 모두 고려하여 진행한다.



② 사회적 기술

사회적 기술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김수정(2009)은 사회적 기술을 대인 관계 상황에서 사용하는 학습된 구체적 과정상 기술로써 대인관계를 위한 개인 상호간의 감정 및 의견을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내적 자원 기술이며 친밀감의 정도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표현의 요소인 공감, 경청, 온정, 요약 등의 기술을 행동연습을 통해 익힌다. 둘째, 사회적 기술 훈련의 방법으로서 강의, 피드백 주고받기, 시범 보이기, 역할극, 행동연습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셋째, 실제 생활에서의 사회적 상황에 노출하고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과제를 제시한다. 넷째, 사회적 기술 훈련의 내용은 자기 소개하기, 장점 발표하기, 비언어적 의사소통 연습, 대화기술, 공감훈련, 자기노출, 자기표현(요청, 거절, 칭찬), 자기주장하기, 협동하기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본 사회적 결과 모델은 사회적 결과를 목적으로 분노 조절 훈련 및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전략을 결합한 원예치료 활동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분노 조절 훈련을 위해 사티어(Virginia Satir)의 분노조절(김영애, 2004)을 사용하였다.

(4) 집단원예치료와 관련한 치료적 중재

집단은 발달과정(Corey, 1995)에 따라 시작단계, 갈등단계, 작업단계, 종결단계를 거친다.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모델의 전기단계인 심리적 결과 모델에서는 대상자의 개인적 감정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으나, 후기단계인 본 사회적 결과 모델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갈등 중재, 즉 분노조절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집단발달과정에 따른 원예치료적 중재는 다음과 같다.

① 시작단계

시작단계는 치료사와 대상자, 비대상자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며 치료사와 대상자, 대상자와 대상자,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의 관계형성이 시작되어 신뢰감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향후 이루어질 활동 및 사용될 식물에 대해 소개하고 집단의 성격과 목적을 제공하며 원예치료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기본규칙과 유의사항을 제공하는 등 집단을 구조화하고, 집단의 목표 및 개인의 목표를 확인하고 명료화하는 단계이다. 시작의 단계에서는 치료과정과 활동 내용, 규칙에 대한 설명과 작업 수행에 대한 지시와 안내가 이루어진다.

이때 원예치료사의 중재로는 치료사 및 대상자, 집단의 목적에 대한 소개와 함께 치료과정과 향후 진행될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집단규칙과 한계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집단규칙과 한계를 정하도록 대상자들을 유도하며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내와 지시를 제공한다. 사정과정에서 수집한 대상자의 원예지식 및 선호식물과 활동을 고려하여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기대감을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각 대상자에 대해 관심을 제공하여 치료사-대상자, 대상자-대상자, 대상자-비대상자와의 라포(rapport)형성을 유도하고 참여를 증진시킨다.

② 갈등단계

갈등단계는 전체 활동 중, 초반부로 대상자들의 상호작용 갈등과 저항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대상자들끼리 또는 치료사와 충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 내 개별 작업 시, 제공된 소재의 배분과 소재의 질에 관련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재 선택의 전후관계에 있어 대상자들끼리의 탐색과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되며, 활동결과물에 대한 주·객관적 평가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하나의 주제와 목표를 위하여 공동 작업을 수행할 시, 소재의 선택 및 규칙의 수행, 예상 결과물에 대한 각기 다른 이미지, 주어진 역할에 대한 만족도 및 수행의 질과 양의 정도,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등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집단원예치료의 갈등단계에서의 원예치료적 중재는 대상자들 사이에 탐색을 유도하고 점차적으로 갈등상황에 노출될 수 있도록 부분적 협동 활동, 비지속적 협동 활동을 구성한다. 활동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갈등을 겪을 때, 치료사는 대상자들이 갈등과 저항을 인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 감정표현, 의사표현 촉진 등을 이용하여 갈등과 저항에 직면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긍정적 피드백을 통하여 대상자가 자신의 갈등과 감정이 수용되고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동료 대상자들이 표현하는 갈등과 감정을 이해, 수용, 공감하도록 격려하여 타인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하여 대상자는 자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함으로써 자기조절감을 획득하며 나아가 타인에 대해 인식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된다.

③ 작업단계

작업단계는 전체 활동 중, 중·후반부에 해당되며 선행된 갈등과정을 겪으면서 동료 대상자에 대한 탐색과 이해가 이루어진 단계이다. 또한 집단원예치료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충분해지며 규칙을 지켜가는 과정을 통하여 집단응집력이 발달되고 강화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집단원예치료의 작업단계는 갈등단계에서 경험한 갈등과 저항,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갈등단계에서 지각된 문제 해결 및 감정조절 방안을 모색하고 훈련하는 단계이다. 여러 원예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르기(재배) 활동에서는 안정되지만 역동적인 식물의 성장을 경험하고, 꾸미기(장식) 활동에서는 완성된 결과물을 통하여 만족감, 성취감을 획득하며, 느끼기(감상) 활동



에서는 자신과 타인, 환경에 대한 탐색과 의미부여가 이루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만족감, 성취감의 획득은 자기효능감, 자기능력감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원천이 된다. 또한 상호작용, 활동, 반응의 원예치료 기제(이상미, 2006)가 활발히 사용되어, 신체적, 인지적, 심리·사회적 원예치료 효과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집단응집력은 더욱 발달되어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서로 적절한 피드백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류정자, 2001). 아울러 협동 작업을 위해서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협력해야 하며, 배려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깨달게 된다. 그룹 내의 한 대상자에게 그룹을 책임지게 하면 지휘자의 특성과 임무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립의 정신도 키워 줄 수 있다(Williams, 1990; 손기철, 1997; Shairo and Kaplan, 1998).

작업단계의 원예치료적 중재는 시작과 갈등단계를 통하여 이룬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성찰 및 통찰을 돕고 나아가 자아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서 원예치료사는 생물학적인요인의 심리학적 통합(Relf, 1992)이나 상징적 의미(symbolic meaning), 평행적 주제(parallel issues) 등을 통하여 식물의 종류, 식물의 각 부분, 식물의 성장주기와 성장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자신의 상황을 빗대어 보게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교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감을 갖게 하거나 수용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한 식물재배 과정이나 수확, 결과물이 있는 활동, 유사하거나 반복되는 활동들을 제공하여 성공과 성취를 경험하도록 하며 갈등단계에서 갈등을 경험하였거나 실패한 심리적 문제와 원예활동을 지각하게 하여 문제해결 방법과 감정조절 방안을 모색하도록 질문하거나 토론을 유도하고 시범과 구체성을 제시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제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가중치(weighting), 양자택일(alternative) 등이 있을 것이다. 이때의 의견 제시는 충고나 조언을 의미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하는 것의 일부으로 대상자가 의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통찰력의 형성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이광자, 2005). 또한 집단응집력 강화를 위하여 대상자 사이 상호작용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고 지속적이고 전체적인 그룹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함께하고 협동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부여하고 상호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른 원예활동으로는 식물재배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으로 식물 재배 과정은 삶의 과정을 재정립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그 기회를 통해 자신의 문제점과 변화하고자 하는 의욕, 자기성취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다.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거나 손으로 작업하는 것은 삶에 대한 영감을 제공하고, 생명에 대한 새로운 느낌을 제공하며, 작업 후에는 자기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성취감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자존감 향상에 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Kaplan,



1973). 식물을 키우면서 경험하는 성취감은 자부심과 자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식물이 생육하는 모습 속에서 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고 창의력과 자기표현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Relf, 1981). 특히 식물재배 및 관리 과정에서 제거된 잡초를 이용한 퇴비만들기 활동은 쓸모없이 여겨져 제거된 어떠한 존재의 유용한 이용이라는 면에서 실패, 좌절, 절망, 죽음 등에 직면한 대상자에게 삶의 대안을 모색하게 하고 교정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허브차, 잼, 김치 담그기 등의 수확 후 결과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만들고 시식하고 나누기, 꾸미기 활동의 결과물 나누기, 선물하기 등의 활동 역시 만족감과 성취감을 고취시킨다. 압화나 드라이플라워를 이용한 활동, 포푸리만들기 등의 활동은 위에서 언급한 퇴비만들기와 마찬가지로 버려지고 쓸모없는 것들의 재활용이라는 의미에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상자들의 자기통찰 및 추후 행동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 전체가 참여하는 기관 내 대규모 장식물 제작하기, 실내·외 정원 만들기 등의 협동활동은 작업단계의 집단응집력을 강화하는데 적절한 활동으로 사료된다.

④ 종결단계

종결단계는 전체 활동 중 후반부에 해당되며, 이 단계에서는 치료사와 대상자 모두가 치료가 끝남에 대한 감정을 다스리고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 진행된 집단원예치료의 의미를 돌아보고, 준비단계에서 제시되었던 집단치료의 목적, 목표와 개별 목표, 활동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고 또한 집단구성원들의 이해, 통합, 강화를 돕는 개념적 구조화를 통해 집단구성원들이 치료과정에서 깨달은 사실을 잊지 않고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구체적 실천을 돕는 학습강화의 단계이다.

종결단계의 원예치료적 중재는 작업단계에서 제시한 바 있는 생물학적 요인의 심리학적 통합, 상징적 의미, 평행적 주제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통찰과 교정적 감정을 유도하고 이렇게 획득된 교정적 감정을 이해하게 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정적 감정에 이르렀거나 개별 목표를 달성한 전체과정에 대한 개념적 구조화를 돕는다. 이러한 개념적 구조화를 통하여 치료의 종결 이후 자신의 행동방안을 모색하게 하고, 그 모색한 방안을 치료 종결이전과 이후에 실천하도록 격려하며 활동의 반복이나 정교화를 통한 훈련과 연습, 나아가 실제 실행의 과정에서 성취감,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 경험 및 표현을 극대화 시키도록 돕는다. 또한 지속적인 공동작업을 통하여 형성된 대상자들과의 상호작용과 협동심, 친밀감을 강화하고 강화된 상호관계의 지속 및 정리를 돕기 위하여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하기보다는 집단원예치료의 완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체 회기 회고 및 정리, 시작단계에서 설정하였던 집단치료과정의 목적, 개별목표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고, 느낌나누기를 통하여 활동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며, 다짐 나누기 등으로 집단원예치료 전체과정에서 학습하거나 모색한 내용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이에 따른 원예활동으로는 선물하기, 수확물을 이용한 전시회 및 바자회, 수확과 꾸미기 결과물의 활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만족감, 성취감, 자기효능감 나아가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하며 식물의 분리, 화분정리, 식물체 정리, 텃밭정리 등 재배과정의 종결과 관련된 활동으로 치료의 종결을 예시하며, 종자채취, 퇴비만들기, 토양중성화 시키기, 토양에 퇴비 섞어 두기 등의 식재 준비와 관련된 활동으로 치료 종결 후 자신의 행동방안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명상, 편지쓰기, 활동 느낌나누기, 전체 활동에 대한 영상물 상영 등과 같은 작별하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7. 프로그램의 운영

(1) 집단의 크기 및 구성

집단의 크기 즉 대상자의 수와 구성을 결정할 때에는 연령이나 치료적 문제, 문제의 심각성 정도 등과 같은 집단을 구성하는 대상 특성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단 상담에서는 6-12명(Liebmann, 1986), 7-8명(Yalom, 1995)을 집단크기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치료집단일 경우에는 4-8명(Lifton, 1972; Corey and Corey, 2007)이 보다 적절하다고 나타나있다. Haller and Kramer(2006)는 대부분의 원예치료는 3, 4-15명 혹은 그 이상의 다양한 규모의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국내에서는 10명이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모델에서는 적절한 집단의 크기를 10-15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집단의 구조성

집단의 형태를 Liebmann(1986)은 특정집단의 과제와 공동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A: 지속적인 구조집단, 대체로 A집단의 성향을 가지면서 가끔 개별 작업을 하는 것을 B:부분적인 구조집단, 집단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집단원들은 개별 작업을 통해 각자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D:지속적인 비구조집단, 대부분 D집단의 성향을 가지면서 개별 작업과정 중 하나의 공동주제가 도출되기도 하는 C:부분적인 비구조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C집단구조는 전체 활동이 대부분 개별 작업으로 이루어지나 일부 회기에서는 기관에 설치할 실내정원을 꾸미거나,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공동접시정원, 공동꽃꽂이 등의 공동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모델의 전기단계에 이루어지는 심리적 결과 모델은 전체 활동이 대부분 개별 작업으로 이루어지나 개별 작업과정 중 일부 회기



에서는 하나의 공동주제가 도출되기도 하는 부분적인 비 구조집단(Liebmann, 1986)을 기본 집단 구조로 한다. 이 단계는 대상자의 개인적 감정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후기단계에 이루어질 사회적 결과 프로그램에서 발휘할 사회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후기단계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결과 모델에서는 대상자의 적극적인 사회화를 위하여 특정집단의 과제와 공동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가끔 개별 작업을 하는 B:부분적인 구조집단 구조를 활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집단 구조성의 결정은 대상자의 특성, 집단발달단계, 대상자 욕구, 시간 등에 따라 치료사가 결정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집단을 구조화시키면 대상자의 창의성과 자율성,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고, 지나치게 비구조화 시킬 경우 새로운 경험과 불안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집단의 구조 및 형태는 다소의 불안감을 자극해 줌으로써 스스로의 문제를 탐색하고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를 통해 대인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해야 할 것이다(옥금자, 2007).

(3) 집단의 개방성

집단의 개방성은 폐쇄집단과 개방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 데, 본 프로그램에서는 활동이 시작된 후에는 새로운 구성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작될 때 참여했던 사람들로만 끝까지 진행되는 폐쇄집단을 원칙으로 한다.

(4) 시간

집단원예치료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회기에 따라 분류하면 12회기 이하는 단기과정, 13회기 이상은 장기과정으로 나눌 수 있고, 집중과정을 주 3회 이상, 분산과정을 주 3회 이하 정기적 만남을 갖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배활동 중심 심리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전기단계로 주 1회, 3개월, 12회기의 단기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 사회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결과 프로그램을 주 1회, 3개월, 12회기의 단기과정으로 연이어 실시할 수 있다.

실제 상담에서 집단회기의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가 표준이나 구성된 집단원의 수가 많아서 각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려면, 활동의 회기 당 시간은 2시간 이상이 필요(김창대 등, 2005)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가이드에서는 회기당 120분 시간 배정을 추천하며 활동에 따라 활동내용 및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5) 프로그램 수행 장소와 분위기

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집단 구성원들이 모여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과 작업 공간이 요구된다. 이는 테이블의 크기와 수, 치료실의 크기, 치료정원, 텃밭, 화단, 높임화단의 크기와 수에 대한 고려를 의미하며, 다량의 재료 및 비품을 보관할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활동의 효율성을 방해하지 않는 적절한 수의 관수시설, 싱크대, 활동의자, 휴식시설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특히 실내의 경우, 집단치료는 개인치료에 비해 집중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명과 소음의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여러 사람이 실내에 모여 있으므로 인해 발생하는 실내공기의 오염과, 흙 등의 소재로부터 발생하는 먼지, 식물이 가지는 향 등으로 인한 불쾌감을 조절하기 위하여 통풍 및 환기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실외의 경우, 개인의 이동에 비해 집단이 이동할 때의 소요시간이 더 긴 것을 감안하여 활동장소까지의 거리를 고려하고, 실내 활동에 비해 더욱 산만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기별 활동의 도입 및 정리단계에 이용될 독립성이 보장되는 주위(surrounding)공간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배활동 중심 심리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개별공간에서 재배활동을 수행하게 되므로, 식재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업공간이 지나치게 크면 대상자가 인식한 심리적 접근성이 낮아진다. 또한 일주일에 2시간 배정된 활동시간 내에 작업수행이 가능하고, 노동으로 인식하지 않는 강도를 가지도록 소형으로 준비한다. 본 가이드와 '사회복귀예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매뉴얼-재배활동과 심리적 결과를 중심으로-(2013a)'에서는 '100~150cm x 100~150cm' 크기의 텃밭을 추천한다. 정원활동 중심 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공동의 공간에 주제정원을 조성하게 되므로 식재공간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작업공간이 지나치게 크면 대상자가 인식한 심리적 접근성이 낮아지므로 활동의 강도를 노동으로 인식하지 않을 정도로 회기별 조성해야하는 정원 크기는 소형으로 계획한다. 따라서 전기단계인 심리적 결과 모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였던 상자텃밭을 그대로 이용하여 후기단계의 소형정원을 만들거나, 전기단계에 사용하였던 개별텃밭의 전체 면적을 고려하여 후기단계에 조성될 4개의 공동정원 면적을 결정하도록 한다.

(6) 한계와 규칙

본 원예치료 과정을 시작할 때 대상자에게는 집단의 기본규칙과 한계에 대한 규정을 알릴 필요가 있다.



〈기본규칙〉

1. 일반적인 사회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 시간엄수, 화장실 사용, 휴식 공간 사용을 안내하고 음료수, 음식, 간식, 담배, 전화 등 허용될 수 없는 것에 관하여 전달한다.
2. 활동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칙으로 식물, 흙 등의 소재와 호미, 삽 등의 도구를 던지고 허가 없이 파괴하거나 동료 대상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결과물을 손상시키는 것에 대한 규칙이며,
3. 당일활동의 재료의 배분, 활동 후 결과물의 처리, 회기 내 주어진 역할과 관련된 규칙 등과 같은 회기별 활동에 따른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규칙이다.
4. 원예치료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 나누었던 대화, 동료대상자의 신상에 관한 비밀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한계에 대한 규정〉

1. 기관에서 제시한 규정과 사항을 살펴야 한다. 특히 교정기관의 규칙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시간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회기별로 주어지는 시간, 회기 내 도입, 전개, 정리 단계에 따라 또는 작업 중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것을 제시한다.
3. 활동 중 대화를 장려할 것인가 제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화는 동료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작업에 대해 상의할 수 있고 동료와 결과물에 대한 느낌을 나눌 수 있게 허용되거나 권장되기도 하나 의도적 집중을 유도하고 동료를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치료사가 대화의 허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화가 허용된 활동에서 집중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대화가 중단되거나 절제되었다면 그 집중상황과 조용한 분위기를 대화를 유도함으로써 분산시킬 필요는 없다.



VII.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본 장에서는 사회복지예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매뉴얼-재배활동과 심리적 결과를 중심으로(2013a)-, -정원활동과 사회적 결과를 중심으로(2013b)-에 수록된 프로그램 전체활동 목록과 활동목적을 제시한다.

1. 사회복지예정 수형자를 위한 재배활동 중심 심리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구성

회기	일시	원예활동	활동목적
1	4월 1 ~ 3 주	압화이름표만들기	압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아름답게 꾸며보고 동료와 치료 사에게 자신을 알리며 타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다.
2	4월 2 ~ 4 주	씨앗뿌리기	자기소개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에게 알리며, 씨앗뿌리기를 경험하면서 씨앗뿌리기에 비유할 수 있는 과거 생애 사건을 찾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	4월 3 ~ 5월 1주	텃밭상자(경계목) 꾸미기	씨앗뿌리기에 비유되어질 수 있는 삶의 사건을 찾아보고, 텃밭의 외형을 꾸며 봄으로써 인간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것에 대한 토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4	4월 4 ~ 5월 2주	과채모종 이식하기	보여지는 것(외형)을 꾸미고 가꿈에 대한 의미를 나누고, 몇 가지 채소 모종을 텃밭에 옮겨 심음으로써 본격적인 재배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5	5월 1 ~ 5월 3주	자루를 이용한 근채 모종 이식하기	보여지는 것(외형)을 꾸미고 가꿈에 대한 의미를 나누고, 몇 가지 채소 모종을 자루에 옮겨 심음으로써 본격적인 재배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6	5월 2 ~ 5월 4주	지렁이 퇴비 상자 만들기	파종해 놓은 엽채류 모종을 텃밭에 옮겨 심고, 잉여재료로 퇴비를 만들어 자원의 순환을 경험할 수 있다.
7	5월 3 ~ 6월 1주	팻말 만들기	3회기에 걸쳐 수행 한 이식활동의 의미를 인간사에 통합하고 텃밭 관리 작업을 수행하며, 자신의 텃밭에 이름을 붙이고 팻말을 만들어 봄으로써 개인 텃밭의 소유를 구체화 할 수 있다.
8	5월 4 ~ 6월 2주	허브 및 초화모종 이식하기	이식에 관한 마지막 활동으로 이식의 방법 및 의미에 대해 되새기고, 소극적 소그룹 협동작업을 최초 경험함으로써 활동 공간이 '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간임을 인식할 수 있다.
9	6월 1 ~ 6월 3주	오이 그물망 유인하기	유인의 개념 및 방법과 의미를 이해하고 공동 관리 및 소유를 인식할 수 있다.
10	6월 2 ~ 6월 4주	텃밭 관리하기	기본적 텃밭 관리작업을 수행하고, 유인과 관련한 지도와 도움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
11	6월 3 ~ 7월 1주	압화준비하기	기본적 텃밭 관리작업을 수행하고, 수확한 꽃과 잎을 이용하여 압화 재료를 준비할 수 있다.
12	6월 4 ~ 7월 2주	가든파티	기본적 텃밭관리작업을 수행하고, 수확한 꽃과 엽채류를 이용하여 상반기 완료를 위한 가든파티를 준비하며 활동 전반 및 활동 완료에 대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예정 수행자를 위한 정원활동 중심 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구성

회기	일시	원예활동	활동목적
1	8월 4 ~ 9월 2째주	압화카드 만들기	압화를 이용하여 카드를 만들고 카드를 보낼 구체적 대상을 탐색해 봄으로써 타인과의 소통을 준비할 수 있다.
2	8월 5 ~ 9월 3째주	텃밭정리하기	전기단계(상반기)에서 사용했던 (상자)텃밭을 정리하고 후기단계(하반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다.
3	9월 1 ~ 4째주	허브식물 정원 만들기	허브식물을 이용한 중형정원을 그룹이 함께 완성하며, 분노의 유형 및 리더와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4	9월 2 ~ 10월 1째주	수생식물 정원 만들기	수생식물 정원을 그룹이 함께 완성하며, 분노발생과정 중 스트레스 요인 및 리더와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5	9월 3 ~ 10월 2째주	관엽식물 정원 만들기	관엽식물 정원을 그룹이 함께 완성하며, 분노발생과정 중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나누고, 리더쉽의 유형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6	9월 4 ~ 10월 3째주	다육식물 정원 만들기	다육식물 정원을 그룹이 함께 완성하며,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한 훈련 중 이완하기를 이해하고, 리더의 역할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7	10월 1 ~ 4째주	정원 장식물 만들기	정원 장식물을 그룹이 함께 완성하며,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한 훈련 중 감정 상승에 대처하기를 이해하고, 구성원의 역할 중 정서적 유대감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8	10월 2 ~ 11월 1째주	잔디인형 만들기	잔디인형을 완성할 수 있으며,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한 훈련 중 화내는 사람에게 대응하기를 이해하고, 구성원의 역할 중 정서적 유대감-칭찬하기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9	10월 3 ~ 11월 2째주	접시정원 만들기	접시정원을 완성할 수 있으며,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한 훈련 4. 일치적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구성원의 역할 중 정서적 유대감-스킨십하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10	10월 4 ~ 11월 3째주	허브 티백 만들기	허브 티백을 완성할 수 있으며,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한 훈련 - 4. 일치적 의사소통을 훈련하고, 리더, 구성원의 관계 중 충정심 대해 이해할 수 있다.
11	10월 5 ~ 11월 4째주	허브 비누 만들기	허브비누를 완성할 수 있으며,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한 훈련 - 4. 일치적 의사소통을 훈련하고 리더, 구성원의 관계 중 인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12	11월 1 ~ 12월 1째주	가든파티	상, 하반기 활동을 정리하면서 정원 및 텃밭 활동에서 발견한 인생사와 이롭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회기별 원예활동 계획안과 프로그램 사례는 '사회복귀예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가이드', '사회복귀예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 재배활동과 심리적 결과를 중심으로 -', '사회복귀예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 정원활동과 사회적 결과를 중심으로 -', '수형자 대상 원예치료 프로그램 사례집 - 재배활동과 심리적 결과를 중심으로 -', '수형자 대상 원예치료 프로그램 사례집 - 정원활동과 사회적 결과를 중심으로 -'까지 총 5권의 자료에 내용을 담았다. 중심으로 -'에 보다 자세히 수록하였다.



참고문헌

- AHTA, 2006, <http://www.ahta.org/information/frq.html>
- AHTA, 1991, <http://www.ahta.org/information/frq.html>
- AHTA, 2004, <http://www.ahta.org/information/frq.html>
- Chi, S.H. 2012.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on mental health of prison inmates. J. of Kor. Soc. People Plants Environ. 15:441-447.
- Choi, M. H. 2011. The therapeutic factors in horticultural therapy. Ph.D. Diss., Dankook Univ., Cheonan.
- Choi, Y. A. 2003. Horticultural therapy. Hakjisa, Seoul.
- Chon, S.Y. 2007. Horticultural therapy on the small muscles and emotional stability of senile dementia for long-term. MS Thesis, Wonkwang Univ., Iksan.
- Corey and Corey 저, 김진숙, 김창대, 박애선, 유동수, 전종구, 천성문 공역, 2007, 집단상담 과정과 실제, 시그마프레스, p56-60, p147-150, 서울
- Corey, 1995,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counseling(4th ed.),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Derogatis, L.R., K. Rickels, and A.F. Rock. 1976. The SCL-90-R and the MMIP:A step in the validation of a new self-report scale. Br. J. Psychiatry 128: 280-289.
- Foundation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9. The study for social cost estimation of crime. Seoul National Univ., Seoul.
- Gabaldo, Maria. M., Maryellen D. King, and Eugene A. Rothert, 2003, Health through horticulture a guide for using the outdoor garden for therapeutic outcomes, Chicago botanic garden, Illinois
- Haller and Kramer, Haller and Krame redt, 2006, Horticultural therapy method, The Haworth Press, pp25, NY
- Jeong, H.Y. 2009.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based upon theory of REBT on the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elderly in facilities. MS Thesis, Mokpo National Univ., Mokpo.
- Kaplan, R. 1973. Some psychological benefits of gardening. Environ. & Behavior 5(2):145-162.
- Kwon, M. H., H. K. Kang, K. J. Bang, S. H. Kim, and S. J. Back, 2012. A study of user's behavior and satisfaction on botanic gardens and arboretums in Korea. J. Kor. Soc. People Plant Environ. 15: 127-134.



- Lee, J.W. 2008.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on the depression and persistence in the long-term hospitalized elderly. MS Thesis, Dankook Univ., Seoul.
- Liebmann, M, 1986, Art therapy for groups, Crom Helm, London
- Lifton, Walter M, Wiley, 1972, Groups: facilitating individual growth and societal change
- Matsuo, E., 1996, Sociohorticulture – A new field of horticulture and its present status in Europe, the U.S.A. and Japan. J. Korean Soc. Hort. Sci. 37: 171–185
- Matsuo, E., 2004, Humanity in horticulture—healing and pleasure, Acta Hort, 790:39–44
- Mattson, R.H., 1982, A graphic definition of the horticultural therapy model. pp. 43–58. In:Mattson, R.H. and J. Shoemaker (Eds.), Defining horticulture as a therapeutic modality, part 2:Models in horticultural therapy. Kansas State Univ., Press and Department of Horticulture, Forestry and Recreation Resources, Manhattan, USA.
- Ministry of Justice, 2007, The act of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Gwacheon
- Park, H. G., W. Moon, and S. G. Lee., 2002, Horticulture, Korea National Open Univ, Press, Seoul
- Relf D., 1981, Human Issues in Horticulture
- Relf D., 1992, Horticulture: Atherapeutictool, J.ofRehab., 39(1): 27–29
- Relf, D., 2006, Volunteers : Implementing therapeutic horticulture or supporting horticultural therapy, Horticultural Therapy International Symposium, pp. 23–44
- Shairo, B.A. and M.J. Kaplan, 1998, Mental illness and horticultural therapy practice: Horticultural as therapy, New York: The food products press
- Son, K. C., M. K. Cho, J. E. Song, S. Y. Kim, and S. S. Lee., 2006, Practice of professional horticultural therapy, Koobook, Seoul
- Stamm, I. and A.L. Barber., 1999, The nature of change in horticultural therapy. J. Therapeutic Horticulture 10:58–62
- Stigsdotter, A.U. & Grahn, P., 2002, What makes a garden a healing garden Journal of Therapeutic Horticulture 13: 60–69
- William James, 1990, Evaluation of the horticulture therapy program; the role of horticulture in human well-being and social development, Virginia: A national symposium, arlington.
- Yalom, I. D., 199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3rd ed.), Basic Books, NY
- 김광일 등, 1984, Phenytoin의 투여량, 혈청농도 및 치료효과에 관한 임상관찰, 정신건강연구학회
- 김수정, 2009,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구



- 김영애, 2004 사티어 의사소통 훈련프로그램, 김영애 가족치료연구소, 서울
- 김창대, 김춘경, 최웅용, 2005, 상호작용중심의 집단상담, 시그마프레스, 서울
- 네이버 국어사전, 2013,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0989600>
- 농촌진흥청, 2013, <http://www.rda.go.kr>
- 류정자, 2001, 미술활동이 품행장애 행동 개선에 미치는 효과, 한국미술치료학회
- 서경순, 2004, 원예활동의 종류 및 강도가 에너지 소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서정근, 이상미, 2004, 원예치료과정의 적용과 실제, 단국대학교 출판부, 서울
- 서정근, 이상미, 2004, 원예치료과정의 적용과 실제, 단국대학교 출판부, 서울
- 서정근, 이종석, 곽병화, 곽혜란, 이애경, 2000, 원예치료학, 단국대학교출판부, 서울
- 손기철, 1997, 원예치료, 서원
- 오민자, 2005, 교도소 재소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서의 미술치료 효능성 탐구, 동국대학교, 서울
- 옥금자, 2007, 집단미술 치료방법론1, 하나 의학사, 서울
- 윤관현, 이장호, 최송미, 2006, 집단상담원리와 실제, 법문사, 서울
- 이경근, 2009, 변혁적, 거래적 리더쉽과 역할의 행동 간의 관계에서 신뢰차원의 차등적 효과, 대한경영학회
- 이광자, 2005, 의사소통과 간호, 신광출판사
- 이상미, 2006, 대상자별 원예치료의 효과와 수익접근법적 경제가치 분석,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대학원
- 이상미, 2006, 대상자별 원예치료의 효과와 수익접근법적 경제가치 분석,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대학원
- 이주연, 2008, 유기견 훈련 프로그램이 청소년 수형자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울

사회복지예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가이드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집필인 김경미, 문지혜, 송정섭, 이상미, 이예지, 장수경, 정순진, 정창현

프로그램 김연홍, 남진수, 박양숙, 신은숙, 제의숙, 최민선, 최민희

진행 조태옥

진행협조 김정애, 윤현석, 이종련, 채석무

감수 박병용, 장종선

편집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도시농업연구팀

발행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441-440 경기도 수원시 수봉로 30(탑동 540-41)

Tel. 031) 290-6129

인쇄처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인쇄사업소

Tel. 1899-6153

ISBN 978-89-480-2291-9 93520

발간등록번호 : 11-1390804-000398-01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